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5차 민속문화재 불과 회의자료

■ 일 시 : 2020. 10. 13.(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화재위원회

##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심의사항】

1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
2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남계리 석장승 이전
3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
4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
5	함양 허삼둘 고택 주변 일반음식점 증축
6	영덕 충효당 종택 주변 신재생에너지 설치(태양광)
7	보은 최감찰댁 주변 퇴비사 신축
8	봉화 계서당 종택 주변 벌채 조림
9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축사 증축
10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축사 신축
11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2	아산 외암마을 내 이간선생 생가터 복원사업부지 발굴조사
13	아산 외암마을(참판댁, 건재고택 포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 【검토사항】

14	안동 영양남씨 남홍재사 지정 검토
----	--------------------

### 【보고사항】

15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심 의 사 항**

## 1.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

###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봉성면 소재 「봉화 오고당 고택」 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봉화군 봉성면 소재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52호 「오고당 구택」 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2016. 12. 9.) 결과 : 지정가치 있음.
  - 지정예고(2020. 8. 6.부터 3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 본 안건은 2020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4. 28.)에서 조건부가결(건축물은 본체에 한하고, 토지는 원안대로 지정할 것)되어 이에 따라 지정예고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봉화 오고당 고택(奉化 五高堂 古宅/Ogodang House, Bonghwa)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 소유자 : ○ ○ ○
  - 수량 : 건축물 1동(본채) 77.26m<sup>2</sup>, 토지 1,443.84m<sup>2</sup>(3필지)
    - 건축물 지정 : 1동(본채) 77.26m<sup>2</sup>
    - 토지 지정 : 1,443.84m<sup>2</sup>(3필지)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본채	조선시대	목조, 5량가, 팔작지붕, 3겹 까치구멍집	77.26m <sup>2</sup>	○ ○ ○

- 토지 지정 : 1,443.84m<sup>2</sup>(3필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sup>2</sup> )	지정(m <sup>2</sup> )	소유자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8	대	1,223	1,223	○ ○ ○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1	대	734	31.16	○ ○ ○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5	대	740	189.68	○ ○ ○
계			2,697	1,443.84	

##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

-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鎮, 1815~1893)이 살았던 집이다. 건립시기는 1820년대로 박한진의 부친 박재경(朴載景, 1765 - ?) 때로 추정하고 있다. 고택은 와가(瓦家) 까치구멍집이며, 일반민가의 까치 구멍집과 달리 별당이 있는 건물이다. 이는 박한진이 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집안이 윗대부터 농사짓는 일반 백성의 위치라기 보다 가난한 양반이나, 중인(中人) 정도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신분이 이어서 별당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그가 별당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 또, 박한진이 의원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당시 궁벽한 오지에 거주하던 그의 명성이 궁궐에 까지 알려져 1875(고종 12)년 현종(憲宗, 1827~1849)의 생모 조대비(1808~1890)의 병을 고쳐주기에 이른다. 그 공로로 고종으로부터 오고(五高)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그리고 조대비의 곁에 있으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 하지만, 박한진과 관련한 자료는 『오고당 유고집』 이외에는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현재 고택의 소유자인 직계후손은 외지에 있고, 오고당 고택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집안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생활용구나, 의례 등도 살펴 볼만한 자료들은 없다
- 이와 같이 흔히 반가(班家)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가록물들이나, 전통적의 생활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고택은 아니다. 다만, 오고당 고택이 까치구멍이라는 독특한 민가형식의 집으로서 이곳에서 나고 살았던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있고, 왕실 대비에게 병을 고쳐주어 왕에게 호를 하사받은 특이한 점 등은 주목된다. 국가민속문화재로서 오고당 고택의 주거공간이 갖는 역사·민속적인 의미에서 학술성은 약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반가가 아니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민가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주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건축부분에서 학술성과 역사성이 담보된다면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전 문화재위원 ○○○>

- 봉화 오고당 본체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쪽집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겹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남녀공간이 구획된 평면구성방법에서 겹집의 변화 양상을 찾을 수 있으며 3겹집이 대문채, 별당채를 둔 본채(정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축평면구성 및 배치법에서 서민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어 민속건축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 오고당 고택은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 까치구멍 등 산간지역 민가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질서체계의 하나로서 남녀의 내외구분이 사랑채가 아닌 여성들의 영역인 별당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고택의 최초 건립 년대 등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변형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현재의 고택 보존·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창호, 마감재 등에 대한 변형이 심하며, 또한 부엌에 덧 달아낸 화장실 및 보일러실의 건축형태와 외관 등이 고택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사한 가옥 형태인 인근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까치구멍집'과 비교할 때 원형의 보존 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약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마. 추가 검토의견(보완자료 제출 관련)

#### <문화재위원 ○○○>

- 보완자료에서는 역사·민속자료에 대한 보완이 더 된 것은 아니나. 건축사적인 분야에 보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민속자료는 일차보고서나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 보관에 대한 애착정도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 건축연대에 관한 문제는 1990년 보수시 상량기문이 종도리에서 발견되었으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량기문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현 거주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박한진(朴翰鎮, 1815 ~1893)의 아버지 재경(載景, 1765- ?)이 현재 오고당을 짓고 봉양리에 거주한 것이라면 1984년 경상북도지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1820년대 전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일차조사에서 제기된 고택의 변형문제는 경상북도가 지방문화재보고서 (1984년), 수리보고서(1992년)를 남겨두고 있어 필요에 따라 원형복원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일차 보고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고당은 민가주택으로 반가와 같이 많은 민속자료를 남기지 않았지만, 벽지에 거주하던 의원의 명성이 궁중에까지 알려져 조대비를 치료하고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친 박한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명문가문의 대단한 인물과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적 재력이 있는 중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고택일 수 있다.
- 끝으로 건축사나 주거사 측면에서 오고당은 3겹 瓦家까치구멍집으로 강원도 3겹 너와집(두리집)과 경상도 북부지방의 2겹 까치구멍집 등과 함께 태백 산맥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까치구멍집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민가 건축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지정할만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 문화재위원 ○○○>

- 오고당 본채<sup>1)</sup>는 강원도 3겹 너와집(두리집)<sup>2)</sup>과 경상도 북부지방의 2겹 까치 구멍집<sup>3)</sup>과의 변화를 보여주는 3겹 瓦家까치구멍집으로 태백산맥줄기를 타고 변화되는 민가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건축적 자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옥배치에 있어서도 본채를 중심으로 전면에 대문채를 두고 좌측면에 별당채를 두면서 공간을 구획한 점은 일반 반가의 배치법과 유사하며 3겹 집 본채를 중심으로 별당채와 대문채가 배치된 사례는 드물다.
- 보완된 자료에서 건립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1984년 ‘지방문화재지정보고서’와 1990년 보수시 상량기문이 종도리에서 발견되었으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보수한 관계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량기문이 남아있다는 것은 현 거주자의 전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1) 정, 측면 3칸은 강원도 두리집평면과 동일하나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샛방까지 마루가 확대되어 봉당, 마루2간이 전, 후로 개방된다.

2) 정, 측면3칸 평면으로 자연환경에 따라 중앙마루 배면쪽에 샛방을 두어 외부로부터 매우 폐쇄적인 평면을 구성함.

3) 정면 3칸, 측면 2칸 평면으로 강원도 두리집의 배면쪽 3칸이 제거된 평면형.

본래 평면의 변화과정은 지방문화재보고서(1984년), 수리보고서(1992년)를 통하여 살필 수 있어 원형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반가에서 볼 수 있는 건립에 관한 충분한 문헌자료는 없으나 평면과 배치법, 가옥의 결구수법 등에서 서민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민속건축 자료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 동 안건은 지난 2019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에서 학술 고증 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다.
- 추가 보완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고택의 변형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건립(또는 중수)년대에 대해서는 상량 기록 미확인으로 인해 여전히 구체적 시점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 또한,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남녀구별 등의 공간구성을 새롭게 추가 보완 하였으나,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진정성 확보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 민속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이 밖에, 고택의 내·외부에 걸쳐 다수 변형된 부분에 대해 관련 사진자료 등이 남아 있어 원형 회복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국가지정문화 재로의 지정 당위성 및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 따라서,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바.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지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상황으로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민속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 신청인 : ○○○[○○○,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 1. 오고당 박한진의 계보

오고당(五高堂) 고택은 밀양박씨 공간공파(恭簡公派) 박한진(朴翰鎮, 1815-1893)의 호를 당호로 한 것이다.

밀양박씨가 봉화로 입향한 것은 박일손(朴逸遜)이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봉화군 운산)에 조상의 묘소를 조성하면서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시기는 대체로 에서 1600년대 초중반으로 보이며, 후손들은 명호면 일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한진은 그의 아버지 재경(載景, 1765-?)이 현재 오고당을 짓고 봉양리에 거주한 것이라면 혼인하고 분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한진은 밀양박씨 공간공파(恭簡公派)이다. 공간공은 밀양박씨 시조 박혁세의 52세손 박건(朴建, 1434 - 1509)으로 공간공파의 시조가 되었다. 그는 밀양박씨 51세 공효공 중손(恭孝公 仲孫)의 셋째아들로 1453년(단종 1) 식문과에 급제하였고, 집현전 수찬, 교리를 거쳐 사정(司正)을 지냈다. 1483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95년(연산군 1) 우참찬으로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겸하여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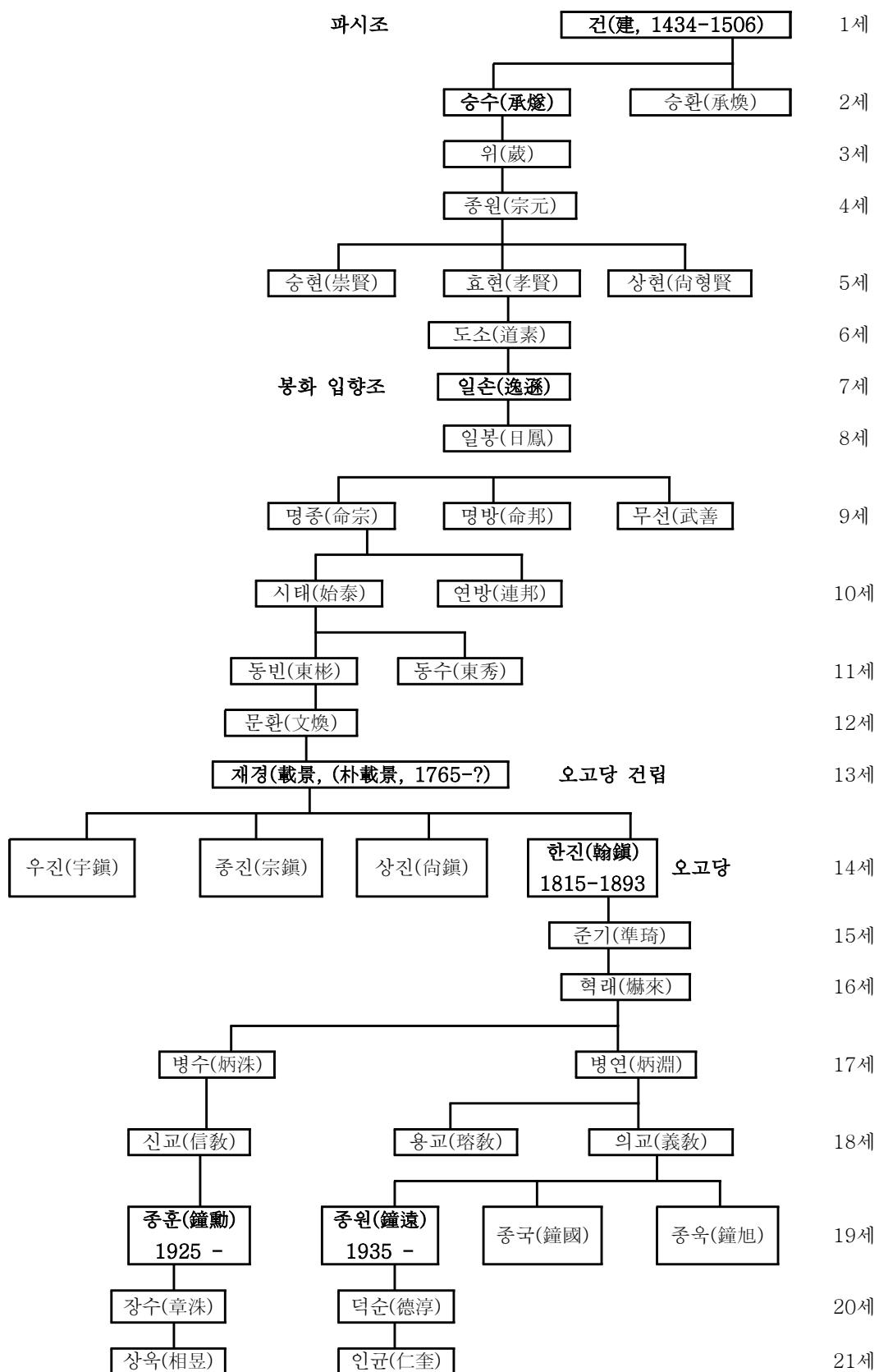
1504년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추시(追謚)을 반대하다가 함경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1506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에 임명되었다가 박원종(朴元宗) · 성희안(成希顏) 등과 함께 반정(反正)에 참여하여 중종(中宗)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로 정국공신 3등이 되고, 밀산군(密山君)으로 봉해졌으며 이듬해 부원군(府院君)으로 진봉되었다. 뒤에 좌찬성과 연경연사(領經筵事)를 지냈다. 시호(謚號)는 공간(恭簡)이고, 세덕사, 월현사, 공간묘, 예산서원(南原)에 배향(配享)되었다.

박한진(朴翰鎮, 1815-1893)은 봉양리에서 태어났으며 품성이 총명 · 예민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12세 때 아버지의 병환으로 여러 의원을 찾았지만 병명은 다양하고 처방도 달랐다. 완쾌는 되었지만 오진으로 인한 병세의 악

화를 보고 이에 의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이면서도 의술을 공부하여 일정한 경지를 이르러 진맥하고 약을 쓰기만 하면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돈이 없어 약을 쓰지 못하는 환자는 무료로 고쳐 주기도 하였다. 환자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여도 치료를 하고 나서는 약 값 외의 돈을 받지 않았다.

1875년(고종 12) 61세 당시에 현종 임금의 생모인 신정왕후 조대비가 부창증(浮脹症)으로 사경을 헤맬 때, 전국에서 명의란 명의는 다 모여들어 갖은 방도를 써가며 애를 썼지만 모두 고칠 수 없다고 물러나자, 오로지 약 세첩만을 써서 완쾌시킨 명의였다고 한다. 그러자 고종은 ‘만리오고(萬里五高)’라고 호(號)를 내렸다. 조대비도 여러 차례에 걸쳐 친필편지를 보내면서 가까이 와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매번 사양을 하고, 7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방 항리에서 일반 백성을 위해서 진맥을 하고 의원 활동을 했다.

## 밀양박씨 공간공파 박한진의 계보



## 2. 고택과 생활문화

봉화 오고당 고택(五高堂 古宅)은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52호(1984. 12. 29 지정)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 4길 26-17(봉양리 598)에 있다. 이 집의 오고당이란 당호는 조선후기 이 집에서 거처한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鎮, 1815~1893)의 생가로 후손들이 불인 명칭이다.

집의 건립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경상북도에서 민속문화재 지정할 때 1820년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집의 당호가 오고당이라고 한 것은 박한진의 의술이 널리 알려져 조선말기 현종의 생모 조대비의 병을 고치게 된 후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박한진의 호를 따서 후대에 불인 것이다.

박한진이 받은 당호인 오고(五高)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박한진이 1875년 61세 때 조대비의 병환을 고친 후 임금은 벼슬을 내려 고마움을 표하려 하였으나 박한진이 거듭 사양하여, 임금이 “인술뿐만 아니라 의리 또한 드높구나.”라고 감탄하고 ‘명가전만리(名可傳萬里 : 명성이 만리에 전해질 것이다)’라 하며 만리(萬里)를 호와 오고(五高)를 우호로 내렸다고 한다. 박한진이 집으로 돌아와 ‘만리정오고거(萬里亭五高居)’라는 쌍현관을 문패처럼 내걸었고, 하사품과 조대비의 한글 친서가 내려왔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박한진과 관련된 글을 모아 유고집인 ‘오고선생전(五高先生傳)’에 실려 있다. 집안에서는 조대비에게 받은 하사품이나, 한글친서 등은 전하지 않고 있다.

오고당 고택은 건립시기와 박한진의 출생 연대로 보아 그의 아버지 박재경(朴載景, 1765 - ?)이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선’이라는 목수가 지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고택에는 오고당(五高堂) 편액이 걸려 있고, 집은 본채 · 별당채 · 문간채 등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오고당의 몸채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와가 까치구명집이다. 고택의 건립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처음부터 몸채 · 아래채 · 문간채가 함께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대문에서 들어오면 말을 탈 때 사용되던 손잡이가 있어 문간채에 마굿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당채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본채는 까치구명집 중에 마루중심형 겹집에 속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봉당을 중심으로 정지(부엌)과 외양간(현재 창고)이 있고, 그 다음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에 안방, 오른쪽의 안에 사랑방과 앞에 사랑마루가 있다.

현재 고택의 거주자는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박종훈과의 친척되는 사람으로 시집와서부터 이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집안에는 과거 농사도구, 의례 등을 볼 수 있는 생활문화 자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3. 조사자 의견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鎮, 1815~1893)이 살았던 집이다. 건립시기는 1820년대로 박한진의 부친 박재경(朴載景, 1765 ~?) 때로 추정하고 있다. 고택은 와가(瓦家) 까치구멍집이며, 일반민가의 까치 구멍집과 달리 별당이 있는 건물이다. 이는 박한진이 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집안이 웨 대부터 농사짓는 일반 백성의 위치라기보다 가난한 양반이나, 중인(中人) 정도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신분이 이어서 별당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그가 별당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 박한진이 의원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당시 궁벽한 오지에 거주하던 그의 명성이 궁궐에 까지 알려져 1875(고종 12)년 현종(憲宗, 1827~1849)의 생모 조대비(1808~1890)의 병을 고쳐주기에 이른다. 그 공로로 고종으로부터 오고(五高)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그리고 조대비의 곁에 있으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하지만, 박한진과 관련한 자료는 『오고당 유고집』 이외에는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현재 고택의 소유자인 직계후손은 외지에 있고, 오고당 고택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집안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생활용구나, 의례 등도 살펴 볼 만한 자료들은 없다.

이와 같이 흔히 반가(班家)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가록물들이나, 전통적의 생활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고택은 아니다. 다만, 오고당 고택이 까치구멍이라는 독특한 민가형식의 집으로서 이곳에서 나고 살았던 박한진이 명의로 알려져 있고, 왕실 대비에게 병을 고쳐주어 왕에게 호를 하사받은 특이한 점 등은 주목된다. 국가민속문화재로서 오고당 고택의 주거공간이 갖는 역사·민속적인 의미에서 학술성은 약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반가가 아니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민가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주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건축부분에서 학술성과 역사성이 담보된다면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전 문화재위원 ○○○

## ①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 ② 문화재 명칭 ; 봉화 오고당고택(奉化 五高堂古宅)

## ③ 연혁 · 유래 및 특징 ;

고종임금 당시 신정황후 조대비의 병환을 치료한 후 고종황제로 부터 ‘만리오고(萬里五高)’라는 호를 받은 박한진(朴翰鎮;1815~1893)이 거주하였던 가옥이며, 현 소유자의 7대조가 현선이라는 목수를 시켜 건립하였다고 전한다.<sup>4)</sup> 그리고 1820년대 건립<sup>5)</sup>이라는 의견도 있어 명확한 건립년대가 밝혀지진 않지만 박한진의 생몰년대와 비교하여 추론할 때 부친 박재경(朴載景;1765~?)이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초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 [건축적 가치]

#### 1) 배치 ;

얕은 야산 경사지에 남동향으로 3간 겹집형태의 본채가 자리하고 좌측에 동향으로 일자 홀집평면의 별채를, 동측으로 5간 일자홀집평면 대문채를 통하여 가옥에 출입토록 하였다.

건물배치에서 뚜렷한 규범을 지니지 않으나 과거 본채 전면 좌측편 기둥에 기대어 별채로 통하는 협문을 설치하고 배면 우측 우주부분에 돌담장을 쌓아 외부공간을 구획하여 민가의 남녀공간구분의 일면은 살필 수 있다.

#### 2) 본 채 ;

본채의 평면구성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건립된 지역별 민가평면형태 가운데 강원도지방에서 볼 수 있는 3간겹집평면형태인 두리집형의 평면이다. 집의 출입구인 봉당을 들어서면 좌측에 부엌과 확장된 보일러실, 화장실이 자리하고 우측에 우물마루바닥의 고방(구 외양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여성공간인 2간통 안방이, 우측에 폐쇄형마루방과 온돌방을 연접배치하고 우측 외부쪽에 뒷마루를 두어 외부에서 봉당으로 출입하지 않고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사랑공간을 배치하였다. 따라서 평

4) 경상북도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정경운위원회조사, 1984.

5) 1990년 보수시 상량문을 발견하여 보관 중 망실하였고 당시의 내용 중 1820년 건립이라고 기억

면의 공간구성은 중앙 마루와 안방이 여성공간, 우측 2간이 남성공간으로 구분되어 일반적 두리집평면구성과는 달리 폐쇄된 마루방을 둘으로서 확연한 공간구획이 이루어진 평면을 구성하였다. 현재 부엌과 화장실, 보일러실공간은 지방문화재지정 후 생활편의시설 개선으로 변경되었으나 우측 고방은 지정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우물마루를 깐 고방이었으나 과거 외양간으로 사용 당시의 흔적이라 볼 수 있는 판벽과 판문, 상부의 수장시설은 남아있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봉당의 출입문은 둔테를 설치한 쌍여닫이 판장문이며 상부에 환기창2구를 두었고 외양간이었던 고방은 봉당쪽으로 외여닫이 판장문과 심벽으로 폐쇄하였다. 그리고 중앙 마루와 사랑마루방 사이는 판문과 심벽으로 구획하였으나 외짝미서기판문을 설치하여 개폐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마루배면은 쌍여닫이 판문을 설치하고 심벽으로 마감하였는데 이는 안동지역 겹집의 마루 배면의 벽체가 판벽으로 마감되는 것과 달리 심벽으로 마감함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환경에 적합한 마감수법을 살필 수 있다. 과거 안방 윗목에 반간폭의 공부방이 있었으나 현재는 통간으로 확장하였으며 좌측에 별채로의 출입을 위한 문을 두었다. 온돌방 천정은 과거 고미반자였으나 현재는 합판에 천정지로 마감하였다. 사랑방은 외부쪽으로 쌍여닫이 세살문과 미닫이문을 겹으로 설치하였고 높게 뒷마루를 두고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랑방으로의 출입은 사랑마루방 쪽 뒷마루를 이용토록하였다.

상부구조는 납도리에 3분변작하여 종량을 얹고 제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5량구조이다. 내진주(內陳柱) 상부에서 전, 후 량재(樑材)를 결구시켰으나 주두위에서 합보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전면 량재는 가운데 량재보다 한단 낮게 기둥에 결구되고 상부의 동자주를 반도록 처리하여 일반적 결구법에서 다소 벗어난 법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붕이 팔작으로 구성된 관계로 추녀를 결구시키기 위하여 외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종량 외측에 종량방향으로 각재를 건너지르고 추녀를 받게 하고 측면 서까래를 올렸다. 따라서 합각이 종량외측에 근접되어 용마루가 짧아졌다. 이는 합각벽을 채광과 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보이며, 웃는 모습의 용마루 인면망와는 민가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라 보인다.

### 3) 별당채

소유주의 전언에 따르면 별당채는 과거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건물로 외부에서는 건물이 노출되지 않고 진입 역시 본채 전면의 협문을 통하여만 하여 공간의 구획이 확연하다.

자연석 기단위에 정면 3간, 측면 1간 3량구조 스크레이트 우진각지붕건물이다. 1982년도 지방문화재지정 당시 평면도에 의하면 좌측에 온돌방 2간, 우측편에 마루를 깐 고방 1간 모두 3간으로 짜여 있었으나 현재는 2통간으로 확장하였다. 상부구조는 막서까래를 얹은 3량가구이며 현재 스크레이트 우진각지붕이나 과거 초가지붕이었다.

#### 4) 대문채

정면5간, 측면 1간 일자홑집평면에 3량 우진각 스테이트지붕건물이다.. 진입방향에서 본 평면구성은 대문간을 중심으로 좌측 마구간, 우측에 문간방, 광과 외양간을 연접시킨 5간으로 짜여진 평면이다. 대문간은 도로쪽으로 둔테의 설치법이 독특한 쌍여닫이 대문을 설치하였다. 좌측 마구간은 보방향으로 판벽마감하고 도리방향으로는 내측은 개방하고 도로측은 토벽으로 폐쇄하였고 대문간 기둥에 말고삐를 매어둔 나무고리가 남아있다. 우측온돌방은 내측으로 외여닫이 세살문이 설치되었고 우측으로 광과 외양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온돌방 옆간은 과거 함실간으로 추정되며 과거 우측간 내측으로 두엄더미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측간이 외양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부가구를 살펴보면 대문간을 중심으로 한 3간은 기둥과 도리의 결구법이 목구조결구법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였으나 우측2간은 치목하지 않은 자연재를 도리와 기둥으로 사용하고 결구법도 갖추지 않아 우측 2간이 후대에 증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측 2간은 본채에서 외양간이 외부로 이전될 때 확장된 부분으로 추정된다.

#### 5) 종합의견

봉화 오고당 본채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겹집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겹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남녀공간이 구획된 평면구성방법에서 겹집의 변화양상을 찾을 수 있으며 3겹집이 대문채, 별당채를 둔 본채(정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축평면구성 및 배치법에서 서민주거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어 민속건축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봉화 오고당 고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전문위원 ○○○

1. 대상유적 : 봉화 오고당 고택(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2호)

2.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 3. 창건과 변천

‘오고당(五高堂)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오고(五高) 박한진(朴翰鎮), 1815~1893)의 생가로 건립 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언에 의하면 그의 부친인 박재경(朴載景, 1765~?)에 의해 1820년쯤인 것으로 추정되어 오고 있다. 박한진은 조대비 신정왕후(神貞王后)의 병환을 고쳐 고종(高宗)으로부터 만리(萬里)와 오고(五高)의 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오고당(五高堂)’은 박한진의 당호(堂號)로 오늘날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의 학방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밀양박씨 문중에서 소위, ‘학방(學房)’을 설치하고 글을 가르쳤다고 하여 일대가 ‘학방골’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고택은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2호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소유자의 7대조가 ‘현선’이라는 목수에 요청하여 고택을 건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현 소유주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과 2015년 등 몇 차례에 걸쳐 보수공事が 있었고 이 중 1990년 공사과정에서 고택의 건립연대를 알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현재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고택의 경내에는 본채와 함께 문간채, 별당채가 별동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이들 부속채가 최초 건립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후에 증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항공사진 등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경상북도 민속자료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1년에도 현재의 모습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 건축구조 및 양식

고택이 위치한 경상북도 봉화군은 오늘날 행정구역상 강원 산간지방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양상은 강원 산간지방에서 경북 북부지방 일대에 분포한 민가(民家)건축에서 쉽게 살펴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지형 및 자연환경에 따라 가옥의 평면을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형태로 구성하게 된다. 즉, 각 공간을 기능에 따라 본채 이외에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채를 분동(分棟) 형식으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1동의 본채 내에 집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평면이 내부 집약적으로 구성된 가옥의 경우 환기 및 채광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붕 용마루 아래에 구멍(까치구멍)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를 소위, ‘까치구멍집’라 부르며 통상 까치구멍집이 초가인데 반해 오고당 고택은 기와를 얹은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고택은 전체적으로 남동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크게 본채와 별당채, 문간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채를 중심으로 우측편에는 문간채, 좌측편에는 별당채가 위치하여 문간채에서 별당채로 통하는 직접적인 동선과 시선을 차단하였는데 이는 별당채가 여성들의 부속공간으로서 소위, 상류주택에서의 내·외의 구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고택 내 또 다른 흔적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본채 좌측 퇴칸에 위치한 부엌 외부에 별당채로 출입하던 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소실되어 기둥에 장부구멍의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흔히 산간지역의 민가건축에서 상용하는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형태에서 통상적으로 상류주택에서 보이는 남녀유별의 유교적 질서체계를 실현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오고당 고택이 갖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구성공간들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채는 정면3칸×측면3칸 규모의 겹집형태로 내부공간은 방, 마루, 봉당, 부엌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측편에는 소위, 안채의 기능을 하는 여성들의 공간으로 안방77과 부엌, 우측편에는 소위, 사랑채 기능을 하는 남성들의 공간으로 사랑방과 사랑대청이 위치하는 등 남·녀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사랑대청 공간은 명의로 알려진 박한진이 진료를 보던 공적영역으로 전면에 쪽마루를 설치하여 별도로 출입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랑대청 뒤편에 위치한 사적영역인 사랑방과의 영역분리를 위해 바닥면의 단차이를 통한 위계를 두어 구성하였다. 대청마루 전면으로는 일종의 안마당 역할을 하는 봉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폐쇄형 가옥에서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출입을 위한 현관의 기능과 함께 실내에서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된다. 봉당 좌측편으로 부엌, 우측편으로는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본래는 외양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는 5량가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졌으며 대청마루 상부에 대들보를 중심으로 전·후 기둥열에 맞춰 맞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놓았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을 세워 상부의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지붕은 훌처마의 기와를 얹은 소위, 까치구멍집으로 양쪽 박공면에 뚫어 놓은 까치구멍을 통해 실내 공기의 순환 및 배연, 자연 채광을 하도록 하였다. 기둥은 내·외진주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고 기둥 상부에는 장여를 걸고 그 위에 보머리를 얹어 도리를 받는 민도집으로 구성하였으며 도리는 모두 방형의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벽체는 일반적으로 심벽으로 마감하였으

나 정면부는 모두 판벽으로 하였는데 이는 과거 부엌의 아궁이 및 외양간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 등의 환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채에 사용된 창호는 사랑영 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래에 현대식 창호로 개조되었으나 정면 주출입구 및 외양간 상부 외벽면에는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봉창 6개소가 남아 있다. 봉당 역시 과거에는 흙바닥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다. 본채 내 각 실들은 다소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공간 확장 등을 위해 실들을 통합하였으며, 부엌은 입식으로 개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엌 측면으로 반칸 규모의 공간을 달아내어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다. 전·후 2칸의 대청마루 귀틀의 경우 동귀틀 방향을 서로 달리 하고 있는데 전면 대청마루 동귀틀의 경우 보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 별당채는 정면3칸×측면1칸 규모로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본래는 2칸의 방과 1칸의 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2칸의 방을 터 넓은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는 3량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져 있으며 전·후 기둥열 위에 대량을 놓고 그 위에 대공을 설치하여 상부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현재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은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지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에는 초가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창호는 기본적으로 세살여닫이 창호로 되어 있으나, 광은 판문을 설치하였고 측면과 배면 일부 벽체 상부에는 봉창을 내었으며 좌측면 기단에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별당채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별당채는 정면4칸×측면1칸 규모로 一자형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외양간 1칸, 대문 1칸, 광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는 3량의 민도리집으로 짜여져 있으며 전·후 기둥열 위에 대량을 놓고 그 위에 대공을 설치하여 상부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지붕은 별당채와 같이 슬레이트를 얹은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1989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조사보고서에는 기와지붕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퇴락의 정도가 심하여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지정가치

- 오고당 고택은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 까지구멍 등 산간지역 민가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질서체계의 하나로서 남녀의 내외구분이 사랑채가 아닌 여성들의 영역인 별당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고택의 최초 건립 년대 등 건축적 내력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 변형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현재의 고택 보존·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창호, 마감재 등에 대한 변형이 심하며, 또한 부엌에 덧 달아낸 화장실 및 보일러실의 건축형태와 외관 등이 고

택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사한 가옥 형태인 인근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까지구명집’과 비교할 때 원형의 보존 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의 경상북도 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2.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남계리 석장승 이전

### 가. 제안사항

전북 순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01호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제102호 「순창 남계리 석장승」의 표면풍화 등 추가적인 훼손 방지를 위해 신축예정인 가족센터 내부로 이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남계리 석장승이 옥외노출로 인해 박리, 균열, 절리 등으로 표면풍화가 심하여 향후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자 해당 소재지에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1개동)'를 신축하고 그 내부에 해당 문화재를 이전하여 보존하는 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순창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1호 「순창 충신리 석장승」
  - 국가민속문화재 제102호 「순창 남계리 석장승」
-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12번지
- (4) 신청내용
  -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남계리 석장승 2기 실내 이전
  - 보관장소 :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 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12번지(현재 장승 소재지)

### 라.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 동 건은 석장승 소재지인 남계리 966-12번지 내에 '순창군 참 좋은 가족 센터'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2인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이 현지조사를 실시('20.07.30)한 결과 ‘해당 문화재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순창군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취하('20.08.03)한 바 있음.

- 해당 문화재는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가 2004년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이유로 현 위치로 이전\*된 바 있으며, 남계리 석장승의 경우에는 1979년 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쓰러진 것을 누군가 다시 세워 놓았다는 지정조사 보고서의 기록 내용이 있음.

\* 2004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04.8.6) 의결, 이전 시 원래의 원형을 참작, 방향·보토·높이·거리·안내판·보호책·조변조경 등을 설계 시 검토·반영

- 이후 순창군이 옥외노출로 인해 박리, 균열, 절리 등으로 표면풍화가 심하여 향후 추가적인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계전문가(문화재 전문위원 김사덕)의 의견에 따라 해당 소재지에 ‘순창군 참 좋은 가족 센터’를 신축하고 그 내부에 적절한 보존환경을 조성하여 해당 문화재를 이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문화재는 원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이미 도로(서부우회 도로)가 건설되어 있어 원위치로의 이전이 사실상 어렵고, 해당 문화재가 박리, 박락, 균열, 절리 등으로 표면 풍화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전문가 자문 하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 내부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석장승 장소 이전 관련 기록 1부.

2.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순창군 제출) 1부.

[붙 임 1]

## 충신리 · 남계리 석장승 이전 관련 기록(문화재대장 등 발췌)

### 1. 순창 충신리 석장승

연번	시기	주요내용	비고
1	1979.01월	<input type="checkbox"/> 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 명 칭 : 순창 충신리 석장승 - 소재지 : 전북 순창군 순창면 충신리	지정조사보고서('78.08월) - '원래는 2기의 석장승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1기만 남아 있다'
2	1989.07월	<input type="checkbox"/> 장소이전 및 보호책 설치	1988년도 국고보조사업
3	2003.02월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변경 - 변경전 : 순화리 58-1 - 변경후 : 충신리 78-2 - 사 유 : 2001년 현상변경허가에 따른 이전	석장승 이전설치 현상변경 허가 - 200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분과 제4차회의('01.10.09)
4	2004.12월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변경 - 변경전 : 충신리 78-2 - 변경후 : 남계리 966-7* - 사 유 : 도시계획도로 건설	석장승 이전설치 현상변경 허가 - 2004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회의('04.08.06)

\* 지적 재조사 완료에 따른 분필로 966-7번지가 966-12번지로 변경(변경신고일 '20.03.13)

### 2. 순창 남계리 석장승

연번	시기	주요내용	비고
1	1979.01월	<input type="checkbox"/> 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 명 칭 : 순창 남계리 석장승 - 소재지 : 전북 순창군 순창면 남계리	지정조사보고서('78.08월) - '구로변에 쓰러져 있었던 것을 동민이 다시 세워 놓았다는 것이다'
2	2004.12월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변경 - 변경전 : 남계리 167-4 - 변경후 : 남계리 966-7* - 사 유 : 도시계획도로 건설	석장승 이전설치 현상변경 허가 - 2004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회의('04.08.06)

\* 지적 재조사 완료에 따른 분필로 966-7번지가 966-12번지로 변경(변경신고일 '20.03.13)

[붙 임 2] 순창 충신리 석장승 및 남계리 석장스 자문의견서(개인정보 포함)

### 3.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내 초가 신축이 문화재 지정구역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하회종가길 ○○○
  - 문화재 지정구역 내 (세계유산 핵심구역)
- (4) 신청내용 : 본채 1동, 싸리나무울타리 1식
  - 본 채(초가) : 정면4칸, 측면1칸 / 29.4m<sup>2</sup>(8.89평) / 납도리 3량가구, 높이 4.62m
  - 싸리나무울타리 L=약 28.0m, H=1.2m

#### 라. 현지조사의견(전 문화재위원 ○○○/2020. 9. 23.)

- 1954년 항공사진을 보면 하회마을 35-8번지 내에 초가형태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옥의 형태를 완전히 파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다만, 건축물은 일자형태의 마구간이 붙은 북향집으로 추정됨.
- 금회 신축되는 초가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초가지붕으로 당초규모(약 8평)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 동 초가 신축 행위가 하회마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됨.

## 4.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

###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존 노후주택 1동을 철거하고, 주택 1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60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 본 건은 2016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12. 13.)에서 조건부가결(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입면비례 조정 후 시행)된 사안이나, 허가기간 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소유자 변경 후 재신청하였음.
  - 당시 허가사항 : 지상 1층, 건축면적 82.3m<sup>2</sup>, 높이 6.6m, 목구조/한식기와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증축
    - 대지면적 521m<sup>2</sup>
    - 기존건물 : 2동
      - (철거예정) 지상 1층, 건축면적 56.2m<sup>2</sup>, 높이 5m, 일반목구조/한식기와
      - (유지) 지상 1층, 건축면적 48m<sup>2</sup>, 높이 5.6m, 일반목구조/한식기와
    - 증축건물 : 1동
      - 지상 1층, 건축면적 94.32m<sup>2</sup>, 높이 6.6m, 일반목구조/한식기와

⇒ 건축면적 합계: 142.32m<sup>2</sup>
- ※ 현지조사 후 건축물 높이 축소(7.25m→6.6m)하여 재신청함.

라. 현지조사 및 검토의견(문화재위원 ○○○/2020. 9. 28.) ※ 현지조사 2020. 8. 24.

- 본 건은 2016. 12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안으로, 금번 신청은 2016년 당시보다 건물의 면적이 커지고, 층고는 동일하나 기존 주택보다는 높음.
- 중축 건물은 개평마을 진입부에 위치해 있고, 건물 형태가 꺽인 ㄱ자형으로 주변 건물과 조화되지 못함.
- 또한, 건물의 매스(mass)가 크고, 장변과 단변의 비례가 맞지 않으며, 입면 양식에 있어서 마을의 주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함.

## 5. 함양 허삼둘 고택 주변 일반음식점 증축

###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둘 고택」 주변 일반음식점 증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함양 허삼둘 고택 주변 일반음식점 증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존 무허가 증축부분을 철거하고,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16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둘 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96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
- (4)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증축
  - 대지면적 : 893m<sup>2</sup>
  - 기존건물
    - 규모 : 지상 1층, 건축면적 99.26m<sup>2</sup>, 높이 3.6m
    - 구조 : 조적조, 슬래브지붕
  - 증축건물
    - 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99.81m<sup>2</sup>, 높이 5.2m
    - 구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벽체),  
⇒ 건축면적 합계: 199.07m<sup>2</sup>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8. 24.)

- 본 건은 문화재에서 약 16m 이격된 1구역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무허가 부분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내용이나, 건물의 입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부분과 크게 차이는 없으며, 입면재료는 샌드위치페널임.
- 종합적으로 문화재와 가까이 인접한 지역에서 경관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6. 영덕 충효당 종택 주변 신재생에너지 설치(태양광)

### 가. 제안사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충효당 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영덕 충효당 주변 태양광 설치사업이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지정구역에서 194m 이격, 경북도민속문화재 제184호 「영덕 우계종택」에서 52m 이격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충효당 종택」
  - 소 재 지 : 경북 영덕군 청수면 인량리 465
- (3) 신청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 1개소
  - 지상형 : B=4m × W=4m × H=3.5m, 발전용량 3kW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회 ○○○/2020. 10. 4.)

- 태양광 전지판은 폐기 시 구리, 납 등의 중금속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오염물질로 항구적으로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현상 변경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함이 타당함.
- 다만 소규모(가정용)이고 폐기 시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 빛 반사 및 유적으로부터 시설물이 전혀 보이지 않아 가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설물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반사 방향이 유적을 향하는 경우는 빛 반사에 의한 유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허가함이 타당함.

- 당해 신청 건은 가정용 소규모이고 앞마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에 의해 차폐되어 시설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반사의 방향도 유적과 반대 방향으로 빛 반사의 영향이 없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7. 보은 최감찰댁 주변 퇴비사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주변 퇴비사 신축 사업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은 최감찰댁 주변 퇴비사 신축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으로 행위허가 신청하였음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삼승면 거현송죽로 301-7
- (3) 신청위치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
- (4) 신청내용 : 퇴비사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96m<sup>2</sup>/196m<sup>2</sup>
  - 층수/높이 : 1층/6.6m
  - 구조 : 강파이프 구조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10. 4.)

- 축사의 퇴비 반출은 부숙(腐熟)하여 배출하도록 올해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 현상변경 1구역 안에 신축하는 것으로 유적으로부터 가시되므로 경관보존을 위해 최소한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8. 봉화 계서당 종택 주변 벌채 조림

###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물야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주변 벌채 조림 사업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봉화 계서당 종택 주변 벌채 조림사업이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보호구역에서 101m ~ 217m 이격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301
- (3) 신청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
- (4) 신청내용 : 수획벌채/조림
  - 벌채계획 : 2.53ha 245본(2020년)
    - 수종·수고 : 소나무, 낙엽송, 기타활엽수 /9m ~ 21m
    - 임령 : 평균 32 ~ 36
  - 조림계획 : 낙엽송(자작나무) 2.53ha 7,590본 식재 (2021년-2023년)
  - 기타 : 운반로 개설 741m

###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봉화 계서당 종택의 안산에 해당되는 구역의 나무를 수획벌채 후 조림하는 사업으로, 일시 벌채 및 자작나무 식재 후 형성되는 경관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 9.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축사 증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축사 및 퇴비사 증축 사업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축사 증축 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평지붕 5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350m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
- (3) 신청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적덕리 ○○○
- (4) 신청내용 : 축사 및 퇴비사 증축

구분	기존		금회 증축	
	1동	2동	3동	4동
건축면적/ 연면적( $m^2$ )	983.25/983.25	81.9/81.9	380.7/380.7	81.9/81.9
층수/높이	1층	1층	1층/5.7m	1층/5.7m
용도	축사 및 퇴비사	축사	축사	퇴비사
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문화재와 신청지 사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얕은 구릉지가 있어 신청지가 잘 조망되지 않으나 문화재 주변에 축사가 밀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 10.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축사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축사 및 퇴비사 신축 사업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천 박용원 고택 주변 축사 증축 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경사지 봉 7.5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440m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천 박용원 고택」
  -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릉리 305
- (3) 신청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적덕리 ○○○
- (4) 신청내용 : 축사 및 퇴비사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50.4m<sup>2</sup> / 950.4m<sup>2</sup>
  - 층수/높이 : 지상 1층 8.4m
  - 구조 : 철골구조

###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문화재와 신청지 사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얕은 구릉지가 있어 신청지가 잘 조망되지 않으나 문화재 주변에 축사가 밀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 11.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사업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제허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문화재지정구역과의 이격거리 233m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정은자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윗고분터길 33-10
-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208-16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분	기 허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85.23m <sup>2</sup> / 85.23m <sup>2</sup>	92.65m <sup>2</sup> / 85.23m <sup>2</sup>
층수/높이	1층 / 7m	1층 / 5.36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위 기와	일반목구조/경사지붕 위 기와

※ 참고사항 : '17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가 보이지 않도록 조성)됨에 따라 지형복원 및 차폐조경을 반영하여 조건부허가 되었음.

####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신청한 건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기존 허가건보다 축소된 점, 지형복원 및 차폐조경이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20-05-12

## 12. 아산 외암마을 내 이간선생 생가터 복원사업부지 발굴조사

###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내 이간선생 생가터 복원사업 부지 발굴조사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내 이간선생 생가터 복원사업 부지 발굴조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아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87-1
- (4) 신청내용 : 발굴조사
  - 조사목적 : 외암 이간선생 생가터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적 근거확보를 통해 복원 시 고증자료로 활용
  - 조사유형 : 발굴조사
  - 조사면적 : 1,425m<sup>2</sup>
  - 조사순서: 기존점 설치→경계구역 및 기준토옹 설정→전면 제토와 배토 →조사 및 기록→유구와 출토유물 처리→조사지역 복토

#### ※ 사업추진경과

- ▶ '17. 11. 외암 이간선생 생가터 학술대회 개최
- ▶ '19. 4. 11.~4. 12. 생가터 추정지 사전조사(표본조사) 실시
  - 건물 기단과 대지조성토 등 확인

###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0. 10. 6.)

- 동 안건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내 이간선생 생가를 복원

- 하고자, 집터로 추정되는 곳의 지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로서 역사 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의 예방조치와 함께 발굴조사 완료 후 복토 등의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13. 아산 외암마을(참판댁, 건재고택 포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참판댁, 건재고택 포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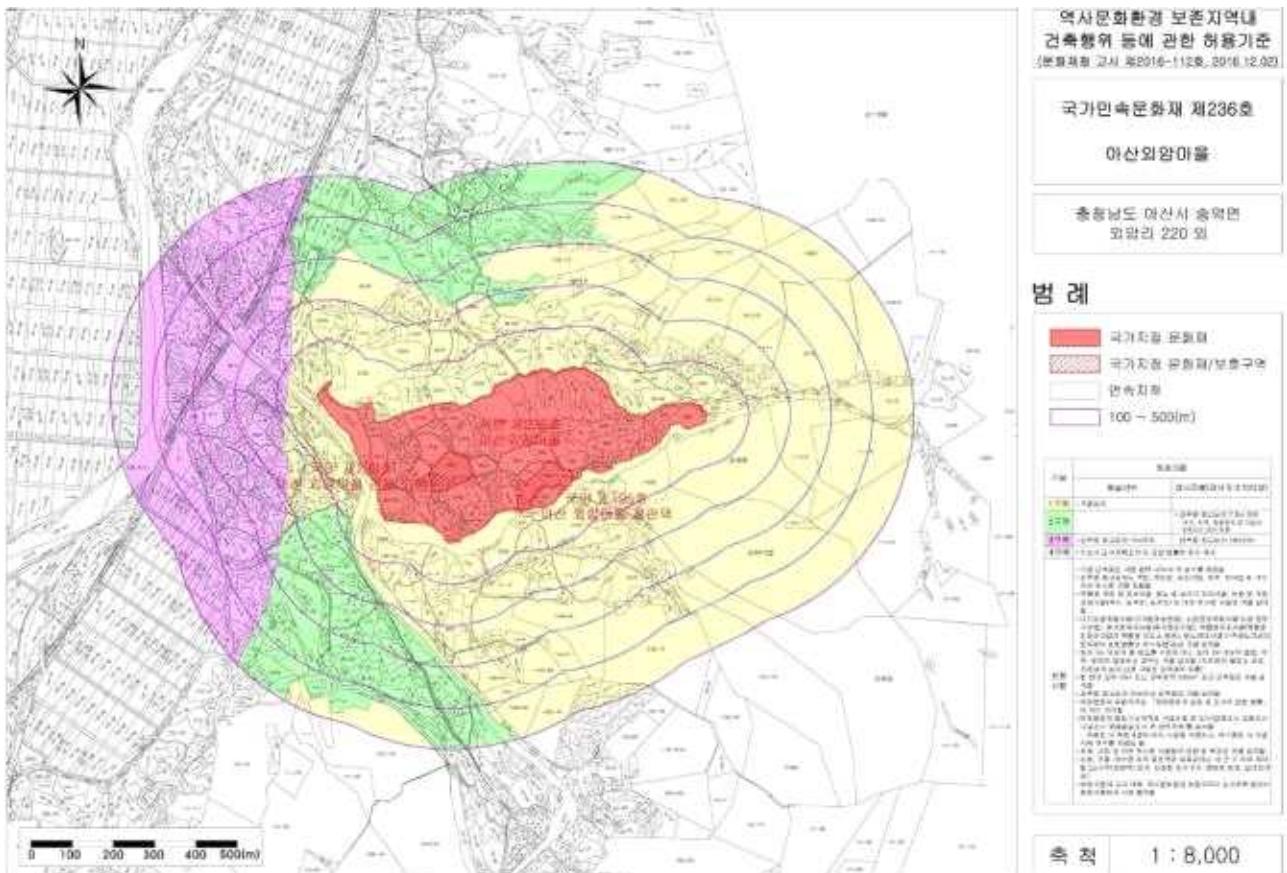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참판댁, 건재고택 포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아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제233호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조정내용
  - 1구역을 2구역으로 일부 조정
    - 송악면 역촌리 산3-1, 102-2 등 일원(약 18,063m<sup>2</sup>)
      - ※ 저잣거리(2구역) 뒷편 산지 부분
  - 2구역의 허용기준 구체화
  -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공통사항의 문구 조정, 건축면적 개별심의기준 4구역(도시계획조례 등 처리구역) 적용 제외
  -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16-112호 2016. 12. 2.)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초가, 한옥, 절충한옥 등 마을과 조화되는 양식 허용</li></ul></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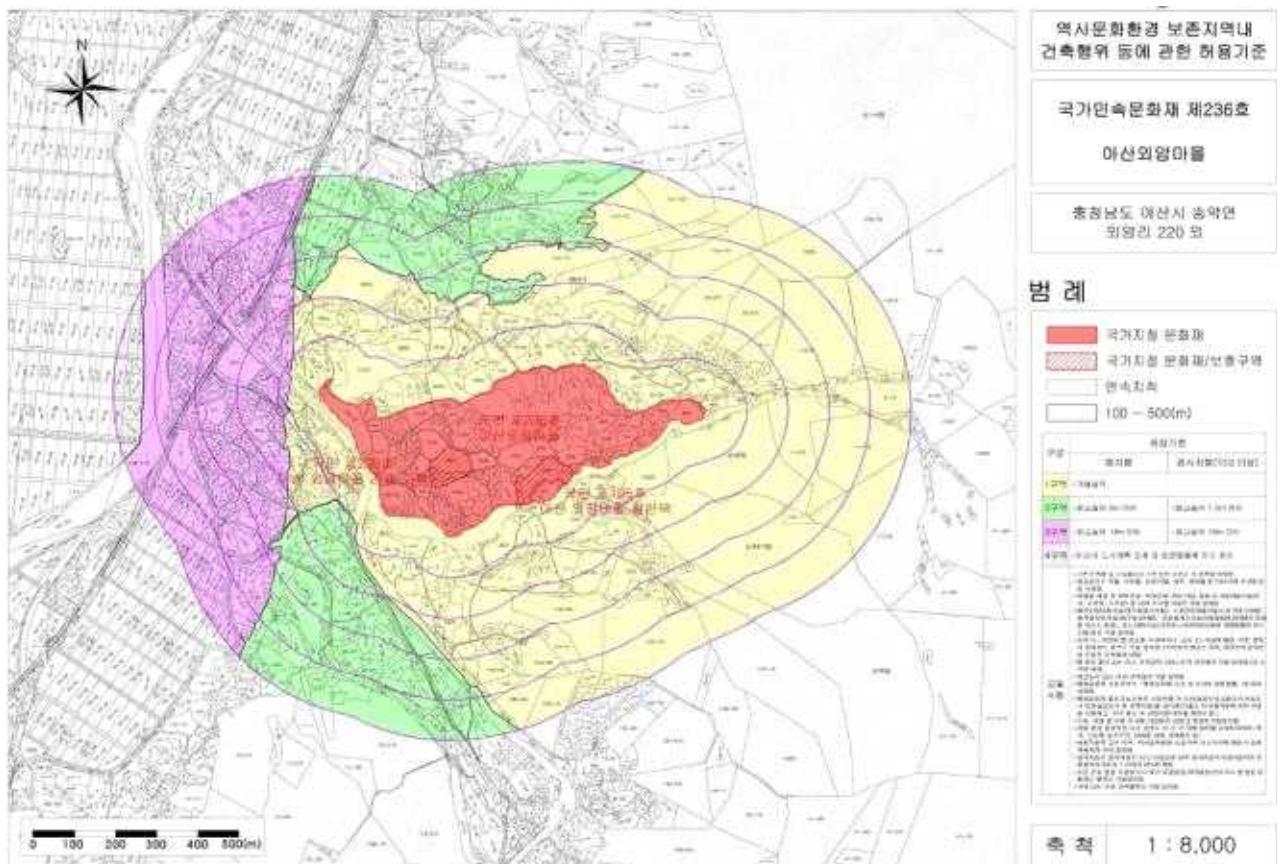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sup>2</sup>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li> </ul>	

	<p>도법)등은 개별 심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sup>2</sup>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4구역 제외)</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산림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라. 주민의견 청취**

-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문구를 조정하고, 기존 허용기준 구역을 일부 완화하는 사안이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0. 9. 29.)**

-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은 마을 앞 남쪽으로 400m를 벗어난 2구역 너머 1구역을 2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 구역별 허용기준 및 공통사항의 문구를 조정하는 것임.
- 2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범위가 매우 적고 위치가 2구역 너머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검 토 사 항**

## 14.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소재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소재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28호 「남흥재사」를 국가 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2016. 12. 9.) 결과 : 지정가치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安東 英陽南氏 南興齋舍/ Namheungjaesa Ritual House of the Yeongyang Nam Clan, Andong)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와룡면 남흥길 108-16(중가구리 532)
- 소유자 : 영양남씨안동파남흥문중
- 수량 : 건축물 1동 247.7m<sup>2</sup>, 토지 1,284.1m<sup>2</sup>(2필지)
  - 건축물 지정 : 1동 247.7m<sup>2</sup>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재사	조선시대	목조, 정침 3량가, 원모루 5량가, 정면 5칸, 좌측면 6칸, 우측면 5칸, 口자형	247.7m <sup>2</sup>	영양남씨 안동파 남흥문중

- 토지 지정 : 1,284.1m<sup>2</sup>(2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m <sup>2</sup> )	지정(m <sup>2</sup> )	소유자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532	대	3,230	1,034.5	영양남씨안동파 남흥문중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산30	임	43,240	249.6	영양남씨안동파 남흥문중
계			46,470	1,284.1	

##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

- 남홍재사는 영양남씨 남홍 문중에서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고 시체를 받들기 위한 공간이다. 이 재사가 처음 건립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74년 중수한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지방문화재 지정보고서(1981년)에서 “이러한 양식은 임진란 이전에 유행하던 양식으로 조선 초기의 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중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나 조선 숙종(肅宗, 1674~1720)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수용하면 남홍재사는 적어도 300년에서 400년 이상 되었고, 경북북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누(樓)가 있고, 규모도 큰 재실이다.
- 이 재사가 갖는 특징과 의미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남홍재사의 건물은 한 문중의 씨족결합과 조상숭배의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유교적 의례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다. 공간배치도 씨족의 위계에 따라 씨족의 가장 상징인 종손의 방은 문중의 원로들이 모인 웃방과 웃방과 연결된 유사방 그리고 누마루와도 연결되어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여 독립적이면서 문중성원들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즉, 종손을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하면서 참여한 문중성원들의 역할에 따라 공간을 배분하고 있다.
- 남홍재사는 처음 남홍 입향조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민생(1349~1407)의 묘소를 수호하고 제향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하였지만, 묘소를 실전(失傳)하여 단을 만든 2세에서 5세까지 조상에 대한 제사도 이 재사에서 준비하고 지낸다. 이 재사를 통해 유교적 조상숭배의식과 씨족의 결합과정을 잘 볼 수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현재도 후손들이 거의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 재사가 불교 사찰을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은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처한 환경과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이와같이 남홍재사는 의례공간으로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이외에 족보 편찬을 하는 공간 등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문중행사의 중심 공간이다. 재사가 건물 자체로 역사성을 가지며, 영양남씨 남홍문중의 조상숭배 의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봄·가을에 올리던 제향이 가을만 올리거나, 참여자의 숫자가

줄었을 뿐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재위원 ○○○>

- 남홍재사는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참판 남민생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실건축이다. □자형 배치에서 벗어난 형태로 우측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향하여 정침과 이어져 있는 구조이며, 정침 영역, 문간채 영역, 원모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축적 특징으로는 건물과 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으로 누마루와 정침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구획된 형태이다. 이와 같은 배치는 안동문화권에서 우계이씨재사가 있을 정도로 희귀한 편이다. 또 안동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팔작지붕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남홍재사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면 복합형 지붕 형태이다. 이러한 평면과 지붕 구성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을 비롯한 다수 가구 부재에서 고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와 원모루에서 나타나는 영쌍창, 문틀의 결구 등 고식의 기법들이 잘 남아있다.
- 종합적으로 남홍재사는 재사 고유의 기능공간과 생활공간인 단일 건물 안에서 누(樓)가 결합된 재사 건물로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고식의 건축수법이 남아있다는 점, 건축의 중수기록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18세기 재사 건축의 희소한 사례로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

- 남홍재사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강당(講堂)과 재실(齋室 또는 廚舍), 누각(樓閣)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실들은 안마당을 향해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는 등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지역 재사 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재사 내 설치한 누각 역시 지역적 보편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익사에 붙어 있는 누각의 위치로 보아 다른 재사들과 구별되는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재사의 최초 건립 연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 당시와 비교해(특히, 2층 누각의 형태와 구조 등) 변형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현재도 지속적으로 재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적기에 보수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 보존·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사 좌측편에 설치한 양봉 장비 등으로 인해 일부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이를 포함한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 7. 29.	대상문화재	안동 영양남씨 남홍재사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민속
	소속	○○○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 영양남씨 남홍재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 · 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위원 ○○○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영양남씨 안동파 남흥문중(英陽南氏 安東派 南興門中)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흥길 108-16(중가구리)
- 신청인 : 영양남씨 안동파 남흥문중(대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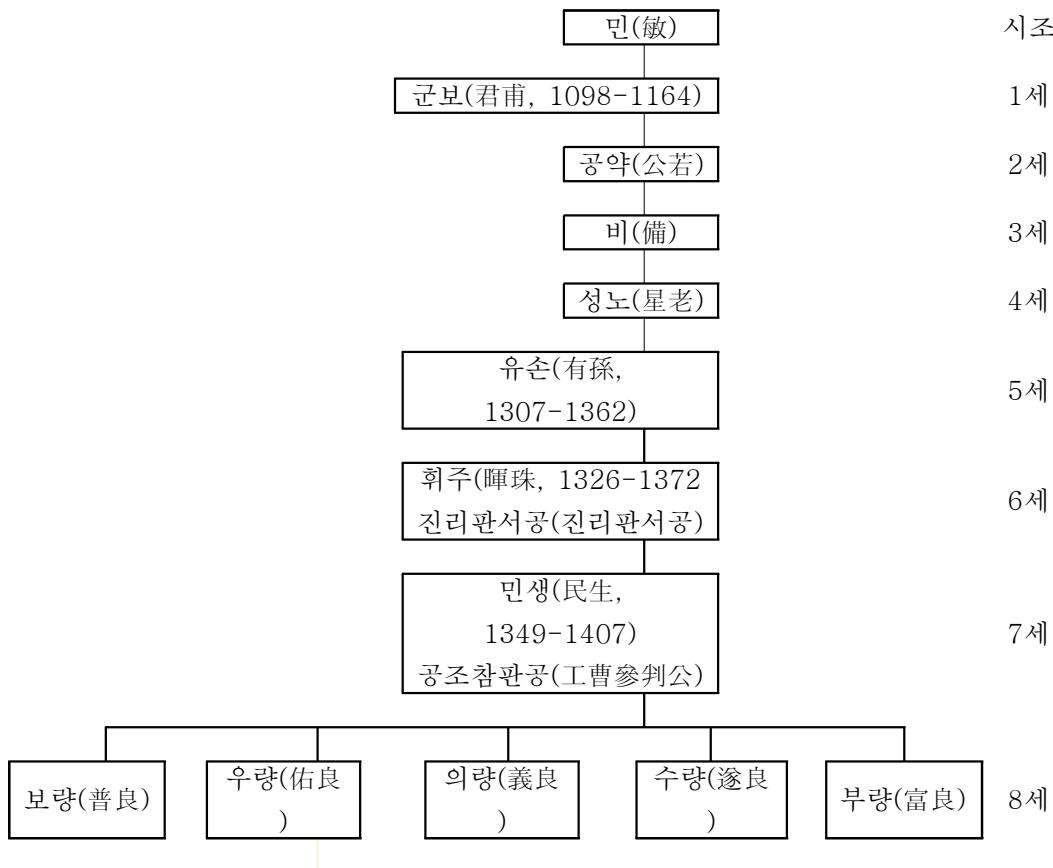
## 1. 영양남씨 안동파 남흥문중

안동의 영양남씨는 시조 남민(南敏)의 둘째 아들 남군보(南君甫, 1098~1164)를 파조로 하고 14세기 중엽 안동에 정착한 남휘주(南輝珠, 1326~1372)를 입향조로 하여 와룡면·일직면·풍산읍 일대에 세거해왔다.

『영가지(永嘉誌)』 「우거조(寓居條)」에 의하면 남공약의 현손인 남휘주가 처음으로 안동 서가현촌(西可峴村,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에 살았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전리판서(典理判書, 고려시대 전리사 정 3품 벼슬)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입향 경위는 알 수 없다.

남휘주의 아들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은 무과에 급제하여 호조참의를 지내고 5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5형제는 모두 무과에 급제하여 남부량(南富良)은 삼척진병마검절사, 남수량(南遂良)은 중령호군, 남의량(南義良)은 수의교위, 남우량(南佑良)은 회령도호부사, 남보량(南普良)은 만호를 역임했다.

영양남씨가 고려말기 안동에 거주하면서 쟁지사족(在地士族)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1478년 안동의 일부 사족(士族)의 원로 13명이 결성한 우향계【友鄉契,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태종 때 좌의정을 역임한 고성이씨(固城李氏) 이원(李原, 1368~1429)의 아들 이증(李增, 1419~1480)이 안동에 낙향하여 당시 안동의 나이 많고 덕이 높은 인물 12명(안동권씨 3명, 흥해배씨 4명, 영양남씨 4명, 안강노씨 1명)과 함께 조직한 모임】 결성에 참여한 것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우향계안(友鄉契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7호)을 보면, 남민생의 손자 진사공(進士公) 남치정(南致晶, 의양의 자)과 사직공(司直公) 남치공(南致恭, 우양의 자), 증손 남경신(南敬身, 부양의 손자)과 남경인(南敬仁, 부양의 손자) 등 흥해 배씨와 함께 4명으로 가장 많은 참가한 것으로 보아 사족(士族)으로서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후손들이 현재 안동에 흩어져 살고 있다.



영양남씨 남홍문중은 남홍 입향조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민생(1349-1407)의 묘소는 남홍리에 있다. 민생(民生)은 부사공(府使公, 삼척부사) 부량(富良), 중령공(中領公, 中領護軍), 수량(遂良), 수의공(修義公, 수의교위) 의량(義良), 회령공(會寧公, 회령도호부사) 우량(佑良), 만호공(萬戶公, 만호) 보량(普良) 등 5명을 두었는데, 거의 모든 후손들이 분가(分家)·분촌(分村)하여 남홍에서 안동의 다른 지역으로 이거하였고. 그들의 묘소도 모두 안동과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다.

## 2. 남홍재사(南興齋舍)와 시제(時祭)

### 1) 남홍재사의 건립

남홍재사는 영양남씨 선대의 묘소를 수호하고 묘제를 받들기 위한 공간이다. 특히, 고려 말기에 남홍에 입향한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공조참판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후손들이 건립되었다.

남홍재사의 건립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74년에 이수연(李守淵,

1693~1750)이 쓴 「남홍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와 1800년도에 적은 「남홍재사 중수상량문南興齋舍 重修上樑文」 등을 통하여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영양남씨 외척으로 성리학자인 진성이씨 이수연(李守淵, 1693-1750)이 쓴 중수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이 재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비바람에 시달려 기둥이 기울어지니 지난 경신년(庚申年) 묘사 때를 이용하여 재사를 수리할 자금을 조금씩 염출하기로 …… 5년이 지난 갑자년(甲子年)에 옛 모습으로 대강 복구되었으니…

② …재사의 제도는 방 5칸, 누 8칸, 좌우 익사가 10여 칸으로 매년 봄가을에 원근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각기 소목으로 일을 받들었으며

③ 또한 남씨들이 지난날 족보가 없어 중간에 처사 표형과 진사 여형이 널리 증빙을 찾고 여러 예문을 참조하여 족보를 발간하여 널리 반질하고 그 책판을 재사에 보관하였다고 하니…

④ …기와를 굽고 재산을 늘려서 벗겨져 떨어지는 것은 때위주고 기둥의 썩은 것은 바꾸어주었으며 방의 미비한 것은 늘려주었다. 또 재계하는데 씻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자리와 솔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였으며 격자창을 꾸미고 부엌의 부뚜막까지 새로 고쳤다. 나아가 누각에는 원모루라고 편액하니 이것이 집의 규모를 늘린 것이다. …

위와 같이 중수의 주요 내용은 ① 중수시기, ② 재실의 규모, ③ 재실의 기능, ④ 중수규모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재실 중수를 논의하고 시작한 것은 1740년(庚申年)이고, 중수가 끝난 것은 1744년(甲子年)이다. 규모는 방 5칸, 누 8칸, 좌우 익사가 10여 칸으로 중수하면서 방을 늘렸고, 부엌을 수리하고, 격자창을 만들고 번화를 하는 등 크게 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재실은 봄·가을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족보를 만들며 책판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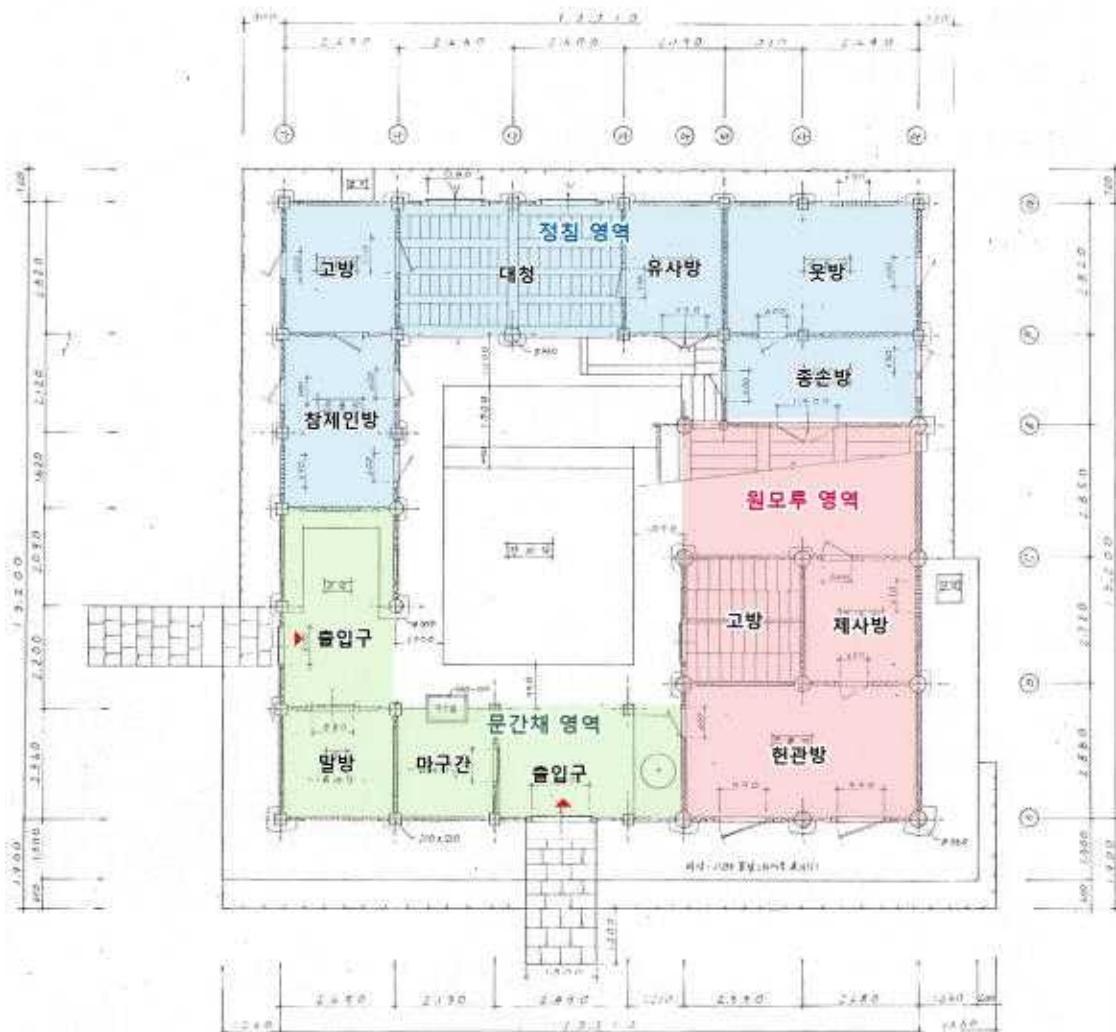
그 뒤 남홍재사는 1800년에 다시 한번 중수하였다는 사실이 중수상량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1774년 「남홍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중수하면서 증·개축한 것이 거의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홍재사가 위치한 곳은 14세기 중엽 안동에 정착한 영양남씨 남휘주(南輝珠, 1326~1372)가 안동에 정착하면서 입향한 곳이다. 이곳이 남홍(南興)이란 지명은 영양남씨가 들어와서 홍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남홍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남홍재사에는 남홍사의 법당을 개조했다는 설이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선시대에 전반적으로 불교의 사찰이 퇴락해 갔고, 사찰이 자리한 곳은 풍수적으로나 경관적인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므로 유교문화가 발달한 조선시대에는 사찰이나, 사찰의 목재로 유교적인 재사를 짓는데 활용한 사례가 있다. 남홍재사도 원모루의 기둥이나 부재 등이 과거 사찰에서 사용한 목재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남홍재사 건물은 정침(正寢)과 누각(樓閣)인 원모루 등 이고, 평면구성은 ‘ㅁ’자형으로

본채와 원모루 각 두 채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남홍재사 전체영역 구분도

남홍재사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사에 제사를 비롯한 행사가 있으면 이곳 머물게 되는데, 각자의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된다.

종손방은 종손이 머무는 방으로 2칸 통칸 규모이며, 누마루와 연접하고 있다. 웃방과 유사방과도 모두 연결되어 있어 여러 사람과 쉽게 소통하도록 한 구조이다. 웃방은 문중의 원로가 머무는 방으로 2칸 통칸 규모이며, 좌측의 웃방, 아래측의 종손방과 누마루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유사방은 유사가 머무는 방으로 1칸 규모이다. 유사는 묘제를 지낼 때 모든 행정 절차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제사를 받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제수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유사방은 대청과 연접하고 있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유사가 진

두지휘하고 대청에서 제물과 제사 준비를 점검하는 동선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방은 1칸 규모로 대청 좌측에 위치하며, 제기 등 제사에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참제인방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참가하는 후손들이 머무는 방으로 2칸 통칸 규모 이루어져 있으며, 고방과 연결되는 구조이다.

원모루는 중층 누각형 건물로 하층은 현관방, 제사방, 고방 등이 있다. 재사의 누마루는 제례를 행할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 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의해 차단과 개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폐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문중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면 담소를 나누거나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궂은 날씨에 묘제를 묘소에서 지낼 수 없을 때는 망제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제관들의 임무를 지정하는 분정례를 행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다음 제사 때를 준비하는 망기(望記)를 작성하는 장소로도 쓰인다.

현관방은 재사를 지낼 때 현관(초현관, 아현관, 종현관)이 머무르는 방이다.

## 2) 시제(時祭)

영양남씨 문중은 매년 가을이면 조상들의 시제를 모시기 위해 남홍재사에 모여 준비한다. 남홍재사의 중수기에 따르면 봄·가을에 묘제를 지냈고 하나, 현재는 음력 10월 15일에 가을에 한번 올린다. 남홍재사가 고려 말기에 남홍에 입향한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공조참판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재사가 있는 남홍마을에는 두 사람의 묘소 이외에 묘소를 찾을 수 없는 2세에서 5세까지 단소(壇所)가 있다.

문중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2세에서 5세까지 단소(壇所)와 6세 휘주, 7세 민생의 묘소에서 각각 시제를 올는데, 그 준비를 남홍재사에 한다.

시제는 1~2일 전에 장보기와 제수 준비를 하고 묘소 및 주변 청소를 한다. 제사의 모든 비용은 남홍문중에서 부담한다. 이때 유사는 재실에서 참제인들의 시도기를 작성하고, 분정과 축문을 작성한다. 집사분정(執事分定)은 종손과 문중대표 등이 의논하여 항렬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물의 진설은 4열에 과실로 좌측에서부터 대추, 밤, 배, 감, 사과를 진설하고 3열에는 숙채로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3가지를 놓고, 면을 놓는다. 2열에는 도적과 편, 탕(육탕), 메, 갱을 놓고 1열에는 술잔을 차린다.

진설이 끝나면 홀기에 따라 강신-초현-아현-종현 순서로 진행된다. 시제가 끝나면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삼현(三獻)이 아니고 단현(單獻)으로 하며 초현관과 유사 한 사람과 축관이 지낸다. 제물은 제상에 올리지 않고 한지에 시루떡, 명태, 닭고기, 대추, 밤, 배, 사과, 조기 등을 진설한다.

산신제山神祭가 끝난 후 모든 참제가들은 재사齋舍로 내려가서 음복을 한다. 음복상은 종손을 비롯한 문중 원로들은 원모루 대청에서, 일반 참제인들은 재사齋舍 마당에 차린

다. 예전에는 독상을 받았으나, 지금은 여러 사람이 겸상을 한다. 음복 음식은 별도 마련한 것이고, 제물에 사용한 음식은 나누어서 어른이 있는 집에 ‘봉기’를 하여 보낸다.

시제 이외에 재사에서는 재사를 중수하거나, 중대한 일을 치른 후에 지내는 고유제가 있다. 남홍재사에서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고하기 위해 2019년 6월 19일에 고유제를 실시하였다.

### 3. 조사자 의견

남홍재사는 영양남씨 남홍 문중에서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고 시제를 받들기 위한 공간이다. 이 재사가 처음 건립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74년 중수한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그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지방문화재 지정보고서(1981년)에서 “이러한 양식은 임진란 이전에 유행하던 양식으로 조선 초기의 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중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나 조선 숙종(肅宗, 1674~1720)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수용하면 남홍재사는 적어도 300년에서 400년 이상 되었고, 경북북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루(樓)가 있고, 규모도 큰 재실이다.

이 재사가 갖는 특징과 의미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1. 남홍재사의 건물은 한 문중의 씨족결합과 조상숭배의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유교적 의례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공간이다. 공간배치도 씨족의 위계에 따라 씨족의 가장 상징인 종손의 방은 문중의 원로들이 모인 웃방과 웃방과 연결된 유사방 그리고 누마루와도 연결되어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여 독립적이면서 문중성원들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즉, 종손을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하면서 참여한 문중성원들의 역할에 따라 공간을 배분하고 있다.
2. 남홍재사는 처음 남홍 입향조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그의 아들 민생(, 1349~1407)의 묘소를 수호하고 제향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하였지만, 묘소를 실전(失傳)하여 단을 만든 2세에서 5세까지 조상에 대한 제사도 이 재사에서 준비하고 지낸다. 이 재사를 통해 유교적 조상숭배의식과 씨족의 결합과정을 잘 볼 수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현재도 후손들이 거의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3. 재사가 불교 사찰을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은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처한 환경과 사회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홍재사는 의례공간으로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이외에 족보편찬을 하는 공간 등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문중행사의 중심 공간이다. 재사가 건물 자체로 역사성을 가지며, 영양남씨 남홍문중의 조상승배 의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봄·가을에 올리던 제향이 가을만 올리거나, 참여자의 숫자가 줄었을 뿐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학술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안동 영양남씨 남홍재사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 영양남씨 남홍재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남홍재사는 와룡면 증가구리 남홍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남홍마을은 고려 말엽에 영양남씨가 처음 입향하여 개척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영양남씨가 마을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남홍사(南興寺)라는 절이 있어서 남홍이라 불렸다는 설과 영양남씨가 마을에 들어와서 변창하게 되어 남홍이라 불렸다는 설이 있다.</p> <p>남홍재사는 원래 남홍사(南興寺)라는 법당을 개조한 건물로 지명에 따라 남홍재사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나 사찰과 연관되었다는 근거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남홍재사가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와 공조참판 남민생(南敏生)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설이 있다.</p>			
주요 지정 사항				
검토	<p>남홍재사의 초창에 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수에 관련된 기록은 청벽(靑壁) 이수연(李守淵)이 기록한 원모루의 「남홍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 『청벽선생문집(靑壁先生文集)』에 기록된 「남홍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 2018년에 남홍재사를 중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남홍재사 중수 상량문」에서 알 수 있다. 이수연이 기록한 남홍재사 중수기에는 '승정후재갑자칠월(崇禎後再甲子七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승정후 첫 번째 갑자년은 1684년이며, 두 번째 갑자년이 1744년으로 이수연의 생몰연도와 비슷하여 1744년에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p> <p>재사의 규모와 증개축에 관한 내용은 영양남씨 족보에도 나타나는데 기록에 의하면 방 5칸, 좌·우 익사 10여 칸, 누 8칸의 규모로 봄·가을에 향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중수하면서 원모루에 편액하였다. 중수에 대한 기록은 기둥과 기와 보수, 방 증축, 부엌</p>			
연혁·유래 및 특징				

보수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중·개축이 있었고 현재의 모습은 중수 이후의 모습으로 보여 진다.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전면 보수를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의 보수이력은 다음과 같다.

- 18C 이전 남홍사를 개조하여 사용
- 1744년 중수 / 원모루 편액
- 1800년 중수
- 1981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 /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 1993년 화장실 개축
- 1995년 부분 보수 및 단소 조성
- 1998년 전체보수
- 2016년~2019년 전체보수

남홍재사의 건축적 특징으로 배치는 전형적인 □자형 배치에서 벗어나 우측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향하여 정침과 이어져 있는 구조이며, 정침 영역, 문간채 영역, 원모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사 좌측에는 화장실 1동이 위치하고 있다.

남홍재사는 건물과 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으로 누마루와 정침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구획되는데 이와 같은 배치는 안동문화권에서 우계이씨재사가 있다. 또 안동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팔작지붕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남홍재사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면 복합형 지붕 형태이다. 이러한 평면과 지붕 구성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남홍재사에서는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을 비롯한 다수 가구 부재에서 고식의 형태가 나타나며,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와 원모루에서 나타나는 영쌍창, 문틀의 결구 등 고식의 기법들이 잘 남아있다. 이러한 양식들은 18세기 이전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식으로 남홍재사의 중수시기인 1744년과 그 시기가 상통한다.

남홍재사는 재사 고유의 기능공간과 생활공간인 단일 건물 안에서 루가 결합된 재사 건물로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고식의 건축수법이 남아있다는 점, 건축의 중수기록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18세기 재사 건축의 희소한 사례로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p>남홍재사는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참판 남민생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실건축이다. □자형 배치에서 벗어남 형태로 우측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향하여 정침과 이어져 있는 구조이며, 정침 영역, 문간채 영역, 원모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p> <p>건축적 특징으로는 남홍재사는 건물과 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합형으로 누마루와 정침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구획된 형태이다. 이와 같은 배치는 안동문화권에서 우계이씨재사가 있을 정도로 희귀한 편이다. 또 안동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팔작지붕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남홍재사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면 복합형 지붕 형태이다. 이러한 평면과 지붕 구성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p> <p>남홍재사에서는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을 비롯한 다수 가구 부재에서 고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와 원모루에서 나타나는 영쌍창, 문틀의 결구 등 고식의 기법들이 잘 남아있다.</p> <p>종합적으로 남홍재사는 재사 고유의 기능공간과 생활공간인 단일 건물 안에서 루가 결합된 재사 건물로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고식의 건축수법이 남아있다는 점, 건축의 중수기록이 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18세기 재사 건축의 희소한 사례로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p>
지정 대상 및 범위	<p>&lt;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gt;</p> <p>&lt;보호물&gt;</p> <p>&lt;보호구역&gt;</p>
보호 관리 사항 검토	<p>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p> <p>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p>
종합의견	<p>남홍재사는 고려 말기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참판 남민생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실건축인데 □자형의 배치와 정침 영역, 문간채 영역, 원모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p> <p>건축적 특징으로는 남홍재사는 건물과 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p>

통합형으로 누마루와 정침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구획된 형태라는 점과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후면 복합형 지붕 형태라는 점,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을 비롯한 다수 가구 부재에서 고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와 원모루에서 나타나는 영쌍창, 문틀의 결구 등에서 18세기 재사건축의 고식기법들이 잘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문화재의 지정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0.7.29. 대상문화재			안동 영양남씨 남홍재사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	직위(직책)	문화재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안동(安東) 영양남씨(英陽南氏) 남홍재사(南興齋舍)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남홍재사 주변 일곽(좌측편 화장실 포함) <보호물> 별도 해당사항 없음 <보호구역> 별도 해당사항 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기 고시된 허용기준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원형 보존 원칙에 의거하여 본래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종합의견	경북 북부지역 재사 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 주변의 다른 재사와 구별되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음. 다만, 최초 건립 연대를 비롯하여 원형 및 변형의 유무, 정도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안동 영양남씨 남홍재사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문화재전문위원 ○○○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남홍재사(南興齋舍)는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남홍마을의 가장 위쪽 경사지에 남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재사 건축의 경우 대부분 묘가 있는 산중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 재사는 마을 내에 건립되었다. 묘소는 마을로 들어서기 전 왼쪽 기슭에 유허비와 함께 조성되어 있다.
- ‘남홍(南興)’이라는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양남씨가 입향한 이래 후손들이 변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영양남씨가 입향하기 이전부터 이미 남홍사(南興寺)라는 사찰이 있었기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

##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안동 영양남씨는 시조 남민(南敏)의 둘째 아들인 남군보(南君甫)를 파시조로 하며, 14세기 중엽 안동에 정착한 6세(世) 남휘주(南暉珠, 1326-1372)를 입향조로 하여 오늘날 안동시 와룡면, 일직면, 풍산읍 일대에 세거(世居)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남홍재사는 고려말 전리판서를 지낸 입향조 남휘주와 함께 공조참판을 지낸 7세(世)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을 포함하여 모두 6위의 묘제(매년 음력 10월15일)를 지내기 위해 건립한 재사(齋舍)이다.
- 창건(創建)과 관련 하여서는 최초, 남홍사(南興寺)의 법당을 개조한 것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은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청벽(靑甓) 이수연(李守淵, 1693~1750)이 작성한 《남홍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에 “崇禎後再甲子七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1744년에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016년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수상량문(重修上梁文)》의 기록(“三十年嘉慶五年庚申正月二十七日”)을 통해서 볼 때, 54년 후 1800년에 한 차례의 중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남홍재사중수기》에 따르면, 최초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중수 당시 대략적인 규모는 엿볼 수 있는데, 방(房) 5칸과 누(樓) 8칸, 좌우 익랑(翼廊) 10여 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수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나 공사가 완성되었는데, 기둥 및 기와 보수, 방 증축, 부엌 보수 등이 있었다. 《중수상량문》은 전문이 아닌 일부 내용만 확인되는데, 입주 및 상량 날짜 · 시간과 함께 도감(都監)이라는 글자가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목수 등의 이름을 기록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 남홍재사는 남북방향으로 경사진 대지에 남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마당을 중심으로 강당(講堂)과 재실(齋室 또는 廚舍), 누각(樓閣)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ㅁ’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즉, 정면 동·서 방향으로 길게 위치한 대문간채는 정면1칸×측면1칸 규모의 말방과 마구간, 대문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좌측편으로는 좌익사의 형태로 부엌, 참제인방, 고방 등이 연접되어 있다. 반대편에는 2층 누각(樓閣)을 포함한 우익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안마당 뒤편의 가장 안쪽에는 대청(大廳)을 중심으로 고방과 유사방, 윗방, 종손방 등의 각 실들이 ‘一’자 형태, 다시 말해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의 평면구성을 취하며 좌·우익사와 연결되어 있다.
- 재사 건물에 2층 누각이 있는 경우는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비교적 큰 재사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건축적 수법으로, 남홍재사가 위치한 안동을 중심으로 예천, 봉화, 영주 등의 지역에서 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누각의 위치가 재사와 별동으로 분리되어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면 및 좌·우익사 등에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남홍재사는 우익사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 다만, 남홍재사의 누각 축이 서쪽으로 약간 틀어져 배치되어 있는데, 최초 건립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후에 중수과정에서 변형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유허비 및 묘소와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 누각의 평면은 정면3칸×측면2칸의 총 6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붕의 형태로 보면, 정면2칸×측면2칸과 정면1칸×측면2칸의 맞배지붕을 서로 직교하게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丁’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붕가구에서의 도리와 보의 결구수법이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누각에 사용된 서까래의 길이가 연접한 실에 비해 길어, 지붕 처마선이 서로 다르게 처리된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진정성 측면에서 원형의 여부에 대한 고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누각의 하층부는 지형의 경사면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여 고방, 제사방, 헌관방 등의 다양한 실을 구성하였으며, 누각의 상층 우물마루 바닥 청판을 들어 올리면 하층의 고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제사의 기능에 맞춰 활동의 편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 남홍재사의 가구구조는 기본적으로 3량의 민도리집으로 단순하게 짜 맞추었으나, 누각은 5량의 소로수장집으로 하였고 기둥 상부에는 익공형식의 공포와 함께 주두, 장여, 창방 등으로 결구하였다. 또한, 누각에 사용된 대공 및 공포, 주두, 보아지 등의 부재에서 확인되는 고식의 형태와 다양한 치목 수법 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되었기 보다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구부재를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안쪽 대청 공간에 사용된 방주의 모접기 수법 역시 매우 특징적으로 보인다.

- 벽체는 전반적으로 제사벽으로 마감하였으나, 문간채와 누각 상층부와 하층부 일부에는 판벽을 사용하였다. 천정은 누각의 경우에는 연등천정으로 하여 상부의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되게 하였으며, 나머지 온돌방 대부분은 소경천정 또는 지반자로 마감하였다. 창호는 외여닫이 세살청판문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쌍여닫이 만자살문을 사용하였으나, 누각 상층부에는 판문과 함께 영쌍창(靈雙窓)을 사용하여 초창 또는 중수에 따른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지붕은 전체적으로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이 섞여 있으며, 또한 정면 좌측과 우측에는 소위, 서산각과 우산각 지붕으로 서로 달리 하였고 우측면에만 풍판을 설치하였다. 재사 건물 좌측편으로는 정면2칸×측면1칸 규모의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초가지붕이었으나 1993년 보수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기와로 교체하였다.
- 남홍재사는 1981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된 이후 1993년과, 1995년, 1998년, 2016년~2019년에 크고 작은 보수 및 시설공사가 등이 있어 왔다.

###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남홍재사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강당(講堂)과 재실(齋室 또는 廐舍), 누각(樓閣)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ㅁ’자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실들은 안마당을 향해 소위,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는 등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지역 재사 건축의 건축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재사 내 설치한 누각 역시 지역적 보편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익사에 붙어 있는 누각의 위치로 보아 다른 재사들과 구별되는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재사의 최초 건립 연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최초 건립당시와 비교해(특히, 2층 누각의 형태와 구조 등) 변형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현재도 지속적으로 재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적기에 보수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 보존·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사 좌측편에 설치한 양봉 장비 등으로 인해 일부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이를 포함한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의 승격 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사항**

## 15.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낙동강 백사장 수목 제거 등 현상변경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8건	허가 17건, 조건부허가 1건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퇴계로 (안동시장)	<p><input checked="" type="checkbox"/> <b>안동 하회마을 내 낙동강 백사장 수목 제거 (허가기간 변경 신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공구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519-1번지 외 8필지(159,187m<sup>2</sup>)</li> <li>- 2공구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81-4번지 외 14필지(173,948m<sup>2</sup>)</li> </ul> </li> <li><input checked="" type="radio"/> 허용기준 : 지정구역 ~ 1구역</li> <li><input checked="" type="radio"/> 사업내용 : 낙동강 내 수목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목면적 : 333,135m<sup>2</sup></li> <li>- 주요수종 : 벼드나무, 아카시아, 갯버들,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등</li> <li>- 공사방법 : 수형 뿌리채 제거, 백사장 및 옛지형 복원</li> </ul> </li> <li><input checked="" type="radio"/> 사업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2019. 8. 14 ~ 2020. 8. 13</li> <li>- 변경 : 2019. 8. 14 ~ 2021. 12. 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checked="" type="radio"/>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8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예산 부족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 신청한 사안 이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 단됨.</li> </ul> </li> </ul>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퇴계로 (안동시장)	<p><input checked="" type="checkbox"/> <b>안동 하회마을 내 농로포장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내</li> <li><input checked="" type="radio"/> 허용기준 : 지정구역</li> <li><input checked="" type="radio"/> 사업내용 : 농로포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깍기 : 209.0m<sup>3</sup></li> <li>· 되메우기 : 19.0m<sup>3</sup></li> <li>· 잔토처리 : 190.0m<sup>3</sup></li> </ul> </li> <li>-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포장(t=20cm) : L=319m, B=3m</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checked="" type="radio"/>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농로가 비포장 이므로 농작물경작 및 운반에 애로점이 많아 동 농로를 콘크 리트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판단됨.</li> </ul> </li> </ul>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8건	허가 17건, 조건부허가 1건																								
합천 목와고택 (국민 제206호)	경남 합천군 묘산면 (합천군수)	<p><input type="checkbox"/> <b>합천 목와고택 주변 도로 정비 및 노상 주차장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87 외</li> <li>○ 허용기준 : 1~2구역</li> <li>○ 이격거리 : 80~120m</li> <li>○ 신청내용 : 도로 정비 및 노상주차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정비(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 48m, 폭 3.0~4.5m(기존 3.0~4.0m)</li> <li>· 도로변(비탈면) 방호벽 설치: 10개(높이 0.9m)</li> <li>·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li> </ul> </li> <li>- 노상주차장 조성(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면적: 490.6m<sup>2</sup></li> <li>· 주차면수: 일반 4개소(2.3×6.0m), 대형 1개소(3.25×14.0m)</li> <li>· 조성구간 기존 도로폭: 3.5m 내외</li> <li>·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도로옆 비탈경사면의 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의와 방문객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므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함양 허삼둘 고택 (국민 제207호)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함양군수)	<p><input type="checkbox"/> <b>함양 허삼둘고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89-2, 229-11 외</li> <li>○ 허용기준 : 5구역</li> <li>○ 이격거리 : 약 293~435m</li> <li>○ 신청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로 2-5호선(금천리 89-2 등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 67.1m, 폭 8.0m(기존 마을안길 폭 7.0m)</li> </ul> </li> <li>- 소로 2-34호선(금천리 229-11 등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 211.6m, 폭 8.0m(기존 마을안길 폭 6m)</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마을안길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절·성토없이 지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고성 왕곡마을 (국민 제235호)	고성군 (국방시설 본부)	<p><input type="checkbox"/> <b>고성 왕곡마을 주변 군부대 부속시설 신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230</li> <li>○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408m 이격(3구역: 경사지붕 12m)</li> <li>○ 사업내용 : 군부대 부속창고 및 차양대 신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총 레</th> <th>건축면적 ( m<sup>2</sup>)</th> <th>연면적 ( m<sup>2</sup>)</th> <th>높이 (m)</th> <th>구조</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창고</td> <td>지상1층</td> <td>772.42</td> <td>718.09</td> <td>8.59</td> <td>철골</td> </tr> <tr> <td>대형차양대</td> <td>지상1층</td> <td>464.20</td> <td>464.20</td> <td>5.3</td> <td>철골</td> </tr> <tr> <td><b>합 계</b></td> <td></td> <td><b>1,664.13</b></td> <td><b>1,609.19</b></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총 레	건축면적 ( m <sup>2</sup> )	연면적 ( m <sup>2</sup> )	높이 (m)	구조	일반창고	지상1층	772.42	718.09	8.59	철골	대형차양대	지상1층	464.20	464.20	5.3	철골	<b>합 계</b>		<b>1,664.13</b>	<b>1,609.1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 공통사항(한변길이 25m, 면적 330m<sup>2</sup>)에 해당되어 허가 신청함.</li> <li>- 문화재에서 408m 이격되어 있고 문화재와 신청부지 사이에 야산에 가려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으므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구 분	총 레	건축면적 ( m <sup>2</sup> )	연면적 ( m <sup>2</sup> )	높이 (m)	구조																						
일반창고	지상1층	772.42	718.09	8.59	철골																						
대형차양대	지상1층	464.20	464.20	5.3	철골																						
<b>합 계</b>		<b>1,664.13</b>	<b>1,609.19</b>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8건	허가 17건, 조건부허가 1건																																				
청주 고은리 고택 (국민 제133호)	청주시 (○○○)	<p><input type="checkbox"/>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판매시설 건축에 따른 부지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 74-14</li> <li>○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492m 이격 (1구역)</li> <li>○ 사업내용 : 판매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석 석축 H=1.6m ~1.9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와 492m 이격 되어 있고, 야산에 가려 보이지 않으나 보도연맹사건 추정 지에 해당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li> </ul> </li> </ul>																																				
이천 어재연 고택 (국민 제127호)	음성군 ((주)○○○)	<p><input type="checkbox"/> 이천 어재연 고택 주변 공장 부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li> <li>○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220m 이격 (4구역)</li> <li>○ 사업내용 : 공장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L형 옹벽 : H=6m, L=225m</li> <li>- L형 옹벽 : H=3m, L=145m</li> <li>- 보강토 옹벽 : H=5.5m, L=975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 상 4구역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름)으로 어재연 고택 배산의 능선 너머에 위치하여 보이지 않 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li> </ul>																																				
화성 정시영 고택 (국민 제124호) 화성 정수영 고택 (국민 제125호)	화성시 ((주)○○○)	<p><input type="checkbox"/>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공장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경사지붕 12m 이하)</li> <li>○ 사업내용 : 공장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층 별</th> <th>건축면적 ( m<sup>2</sup>)</th> <th>연면적 ( m<sup>2</sup>)</th> <th>높이 (m)</th> <th>구조</th> </tr> </thead> <tbody> <tr> <td>기존</td> <td>2층</td> <td>1,207.85</td> <td>1,446.35</td> <td>10.4</td> <td>철골</td> </tr> <tr> <td>기허가 ( '19.10)</td> <td>2층</td> <td>1,553.11</td> <td>3,106.22</td> <td>12</td> <td>철골</td> </tr> <tr> <td></td> <td>3층</td> <td>199.5</td> <td>598.5</td> <td>12</td> <td>철골</td> </tr> <tr> <td>금회</td> <td>1층</td> <td>621.41</td> <td>621.41</td> <td>12</td> <td>강파이 프/천막</td> </tr> <tr> <td colspan="2"><b>합 계</b></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층 별	건축면적 ( m <sup>2</sup> )	연면적 ( m <sup>2</sup> )	높이 (m)	구조	기존	2층	1,207.85	1,446.35	10.4	철골	기허가 ( '19.10)	2층	1,553.11	3,106.22	12	철골		3층	199.5	598.5	12	철골	금회	1층	621.41	621.41	12	강파이 프/천막	<b>합 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공장부지에 가설 건축물(창고) 건축을 위해 허가 신청한 사항임</li> <li>- 공통사항(한변의 길 이가 25m를 초과하고 면적이 330m<sup>2</sup> 초과) 에 따라 허가신청한 건으로, 문화재와 신청 부지 사이에 능선이 있어 조망되지 않으 므로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19.10월 문화재위원 회에서 공장 증축에 대해 기허가 완료</li> </ul> </li> </ul>
구 분	층 별	건축면적 ( m <sup>2</sup> )	연면적 ( m <sup>2</sup> )	높이 (m)	구조																																		
기존	2층	1,207.85	1,446.35	10.4	철골																																		
기허가 ( '19.10)	2층	1,553.11	3,106.22	12	철골																																		
	3층	199.5	598.5	12	철골																																		
금회	1층	621.41	621.41	12	강파이 프/천막																																		
<b>합 계</b>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8건	허가 17건, 조건부허가 1건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안동시장)	<p><input type="checkbox"/> <b>안동 하회마을 산불 피해목 벌채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산 4번지 일원</li> <li>○ 허용기준 : 지정구역</li> <li>○ 사업내용 : 안동 산불 피해목 벌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 종 : 혼효림</li> <li>- 피해면적 : 약 8.4ha</li> <li>- 재 적 : 153.97m<sup>3</sup>/ha</li> </ul> </li> <li>○ 사업주체 : 안동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4월 안동 지역에 발생했던 대형 산불로 인한 고사목 벌채사업으로서 경관 불량, 병충해 발생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li> </ul> </li> </ul> <p>※ 2020.8.28. ○○○ 위원 현지조사 실시</p>															
구례 운조루고택 (국민 제8호)	전남 구례군 토지면 (재단법인 한국LPG배 관망사업단)	<p><input type="checkbox"/> <b>구례 운조루 고택 주변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263(저장 탱크 설치부지)</li> <li>○ 허용기준 :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처리구역)</li> <li>○ 이격거리 : 약 450m</li> <li>○ 신청내용 :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G소형저장탱크(2.9톤×1기, 0.25톤×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3.0m, 탱크부지 18.62m<sup>2</sup>(4.9m×3.8m)</li> </ul> </li> <li>- 배관망 : 직경 63mm, 연장 1,160m, 지하매설 심도 1.0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석유가스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마을의 액화석유가스 안전성·편리성 확보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고택에서 450m 이상 떨어진 마을끝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li> </ul>															
청주 고은리 고택 (국민 제133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	<p><input type="checkbox"/> <b>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 ○ ○</li> <li>○ 이격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에서 213m 이격 (1구역)</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허가 기준)</th><th>금회</th></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 연면적</td><td>97.51m<sup>2</sup>/97.51m<sup>2</sup></td><td>113.92m<sup>2</sup>/97.84m<sup>2</sup></td></tr> <tr> <td>층수/높이</td><td>1층/5.4m</td><td>1층/5.4m</td></tr> <tr> <td>용도</td><td>자재창고</td><td>단독주택</td></tr> <tr> <td>구조</td><td>철골구조</td><td>일반목구조</td></tr> </tbody> </table>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97.51m <sup>2</sup> /97.51m <sup>2</sup>	113.92m <sup>2</sup> /97.84m <sup>2</sup>	층수/높이	1층/5.4m	1층/5.4m	용도	자재창고	단독주택	구조	철골구조	일반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허가사항과 규모 등에 큰 차이가 없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li> </ul>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97.51m <sup>2</sup> /97.51m <sup>2</sup>	113.92m <sup>2</sup> /97.84m <sup>2</sup>																
층수/높이	1층/5.4m	1층/5.4m																
용도	자재창고	단독주택																
구조	철골구조	일반목구조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8건	허가 17건, 조건부허가 1건															
청주 고은리 고택 (국민 제133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	<p><input type="checkbox"/>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li> <li>○ 이격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에서 213m 이격 (1구역)</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허가 기준)</th><th>금회</th></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 연면적</td><td>104.85m<sup>2</sup>/ 165.77m<sup>2</sup></td><td>92.65m<sup>2</sup>/ 98.45m<sup>2</sup></td></tr> <tr> <td>층수/높이</td><td>2층/7.1m</td><td>2층/6.65m</td></tr> <tr> <td>용도</td><td>단독주택</td><td>단독주택</td></tr> <tr> <td>구조</td><td>철근콘크리트</td><td>일반목구조</td></tr> </tbody> </table>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104.85m <sup>2</sup> / 165.77m <sup>2</sup>	92.65m <sup>2</sup> / 98.45m <sup>2</sup>	층수/높이	2층/7.1m	2층/6.65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li> <li>- 기존 허가사항과 규모 등에 큰 차이가 없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104.85m <sup>2</sup> / 165.77m <sup>2</sup>	92.65m <sup>2</sup> / 98.45m <sup>2</sup>																
층수/높이	2층/7.1m	2층/6.65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청주 고은리 고택 (국민 제133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	<p><input type="checkbox"/>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li> <li>○ 이격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에서 213m 이격 (1구역)</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허가 기준)</th><th>금회</th></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 연면적</td><td>104.85m<sup>2</sup>/ 165.77m<sup>2</sup></td><td>92.65m<sup>2</sup>/98.45m<sup>2</sup></td></tr> <tr> <td>층수/높이</td><td>2층/7.1m</td><td>2층/6.65m</td></tr> <tr> <td>용도</td><td>단독주택</td><td>단독주택</td></tr> <tr> <td>구조</td><td>철근콘크리트</td><td>일반목구조</td></tr> </tbody> </table>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104.85m <sup>2</sup> / 165.77m <sup>2</sup>	92.65m <sup>2</sup> /98.45m <sup>2</sup>	층수/높이	2층/7.1m	2층/6.65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li> <li>- 기존 허가사항과 규모 등에 큰 차이가 없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104.85m <sup>2</sup> / 165.77m <sup>2</sup>	92.65m <sup>2</sup> /98.45m <sup>2</sup>																
층수/높이	2층/7.1m	2층/6.65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청주 고은리 고택 (국민 제133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	<p><input type="checkbox"/>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li> <li>○ 이격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에서 213m 이격 (1구역)</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허가 기준)</th><th>금회</th></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 연면적</td><td>99.82m<sup>2</sup>/ 99.82m<sup>2</sup></td><td>92.65m<sup>2</sup>/98.45m<sup>2</sup></td></tr> <tr> <td>층수/높이</td><td>1층/7m</td><td>2층/6.65m</td></tr> <tr> <td>용도</td><td>단독주택</td><td>단독주택</td></tr> <tr> <td>구조</td><td>철근콘크리트</td><td>일반목구조</td></tr> </tbody> </table>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99.82m <sup>2</sup> / 99.82m <sup>2</sup>	92.65m <sup>2</sup> /98.45m <sup>2</sup>	층수/높이	1층/7m	2층/6.65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li> <li>- 기존 허가사항과 규모 등에 큰 차이가 없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99.82m <sup>2</sup> / 99.82m <sup>2</sup>	92.65m <sup>2</sup> /98.45m <sup>2</sup>																
층수/높이	1층/7m	2층/6.65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계		18건	허가 17건, 조건부허가 1건															
청주 고은리 고택 (국민 제133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	<p>□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li> <li>○ 이격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에서 213m 이격 (1구역)</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허가 기준)</th><th>금회</th></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 연면적</td><td>99.72㎡/ 99.72㎡</td><td>108.32㎡/98.86㎡</td></tr> <tr> <td>층수/높이</td><td>1층/7.1m</td><td>1층/5.55m</td></tr> <tr> <td>용도</td><td>단독주택</td><td>단독주택</td></tr> <tr> <td>구조</td><td>철근콘크리트</td><td>철근콘크리트</td></tr> </tbody> </table>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99.72㎡/ 99.72㎡	108.32㎡/98.86㎡	층수/높이	1층/7.1m	1층/5.55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허가사항과 규모 등에 큰 차이가 없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li> </ul>
구분	기준(허가 기준)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99.72㎡/ 99.72㎡	108.32㎡/98.86㎡																
층수/높이	1층/7.1m	1층/5.55m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양주 매곡리 고택 (국민 제128호)	경기 양주시 남면 (○○○)	<p>□ 양주 매곡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경기 양주시 남면 매곡리 ○○○</li> <li>○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454m 이격 (4구역)</li> <li>○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강토옹벽 : H=0.2~4m</li> <li>- 절성토 : -5.8m ~ +3.4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상 4구역으로 매곡리 고택과 신청지 사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li> </ul>															
청도 운림고택 (국민 제245호)	경북 청도군 금천면 (○○○)	<p>□ 청도 운림고택 주변 축사 양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li> <li>○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00m 이격 (2구역: 평지봉 5m)</li> <li>○ 사업내용 : 축사 증축(양성화)</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축사</th><th>퇴비사 및 창고</th></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 연면적(m<sup>2</sup>)</td><td>90/90</td><td>56.56/56.56</td></tr> <tr> <td>층수/높이</td><td>1층/5.23m</td><td>1층/3.6m</td></tr> <tr> <td>구조</td><td>강파이프구조</td><td>강파이프구조</td></tr> </tbody> </table>	구분	축사	퇴비사 및 창고	건축면적/ 연면적(m <sup>2</sup> )	90/90	56.56/56.56	층수/높이	1층/5.23m	1층/3.6m	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와 신청부지 사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li> </ul>			
구분	축사	퇴비사 및 창고																
건축면적/ 연면적(m <sup>2</sup> )	90/90	56.56/56.56																
층수/높이	1층/5.23m	1층/3.6m																
구조	강파이프구조	강파이프구조																
괴산 송병일 고택 (국민 제147호)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면장)	<p>□ 괴산 송병일 고택 주변 가설건축물 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342-1</li> <li>○ 이격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에서 115m 이격 (1구역)</li> <li>○ 사업내용 : 가설창고 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연면적 : 28㎡/28㎡</li> <li>- 층수/높이 : 지상 1층/2.7m</li> <li>- 구조 : 컨테이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와 신청부지 사이 건축물 등으로 인해 조망되지 않으며, 소규모 가설창고 설치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li> </ul> </li> </ul>															